



• 구금시설



• 식량안전



김정은 시대

# 북한인권은 변화하고 있는가?



• 노인권



• 건강권

총괄보고서  
(2023)



· 구금시설



· 식량안전



· 여성권



· 건강권

김정은 시대

# 북한인권은 변화하고 있는가?

이우태  
이규창  
정은이  
나용우

KINU 통일연구원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 목차

<b>I. 서론</b> .....	7
<b>II. 김정은 시대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과 북한의 대응</b> ... 11	
1. 책임규명·인권제재와 북한의 대응 수위 강화.....	13
2. 국제사회의 정보 유입 활동 강조·강화와 북한의 사상·정보 통제... 16	
3. 인도지원·개발협력을 통한 북한인권증진 활동.....	18
4. 이산가족·억류자 사안의 인권적 접근 강조.....	19
5. 북한의 인권 사안별 선택적 수용·협력.....	20
<b>III. 분야별 실태</b> .....	23
1. 정치적·시민적 권리.....	25
가. 공개처형.....	25
나. 구금시설 내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	30
다. 정치범수용소.....	35
라. 사상·정보통제.....	40
2.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45
가. 식량권.....	45
나. 건강권.....	56
다. 노동권.....	66
라. 교육권.....	71
마. 사회보장권.....	75

3. 취약계층.....	80
가. 여성.....	80
나. 아동.....	88
다. 장애인.....	94
<b>IV. 코로나19가 북한인권엔 미친 영향.....</b>	<b>99</b>
1.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과 생명권 침해.....	101
2. 인도적 상황 악화.....	103
3. 통제 및 통치 강화.....	105
<b>V. 결론.....</b>	<b>107</b>



## 표목차

〈표 II-1〉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사형 규정 .....	17
〈표 II-2〉 김정은 시기 인권 사안에 대한 북한의 상반된 양태 .....	21
〈표 III-1〉 북한의 주요 자연재해 발생 현황: 2012~2021년 .....	54
〈표 III-2〉 북한의 무상의무교육 학제 .....	74
〈표 IV-1〉 북한의 비상방역 등급 .....	102
〈표 IV-2〉 북한 비상방역법의 사형 조문 .....	103



## 그림목차

〈그림 II-1〉 인권 침해 북한 개인·기관 제재 .....	15
〈그림 III-1〉 공개처형 사유 .....	28
〈그림 III-2〉 북한 주민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 말살 .....	39
〈그림 III-3〉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행위 처벌을 알리는 북한 포고문 · 44	
〈그림 III-4〉 2022 세계기아지수: 북한 .....	45
〈그림 III-5〉 북한의 곡물 생산량: 2016~2022년 .....	47
〈그림 III-6〉 산림복구정책으로 인한 돼기발 감소(2014년/2020년) ···	51
〈그림 III-7〉 북한의 보건의료시설 및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	57
〈그림 III-8〉 북한의 상급병원 .....	58
〈그림 III-9〉 코로나19 이후 북한의 아동 예방접종률 변화 .....	64
〈그림 III-10〉 북한의 건강권 실태 .....	66
〈그림 III-11〉 북한의 해외파견 노동자 .....	69
〈그림 III-12〉 북한의 본보기학교 .....	71
〈그림 III-13〉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한 노동신문 보도 .....	72
〈그림 III-14〉 북한 2022년 인구 피라미드(추정) .....	77
〈그림 III-15〉 장마당 활성화에 따른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 .....	81
〈그림 III-16〉 북한의 여성권 실태 .....	88
〈그림 III-17〉 김정일 생일 80주년 경축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단체대회 · 91	
〈그림 III-18〉 도로 보수 나선 북한의 어린이 .....	92
〈그림 IV-1〉 방역규정 절대준수를 강조하는 북한 포스터 .....	106



# I

## 서론





# I. 서론

북한은 세계에서 인권 상황이 가장 열악한 국가 중 하나이며 현재도 중대하고 심각한 인권침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 실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개선을 촉구해왔다. 특히 유엔 총회는 2005년부터 2022년까지 18년 연속으로 북한인권 결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04년부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임명되어 북한의 인권실태를 유엔 인권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2013년 3월에는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COI)가 설치되어 북한에서의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구체적 사실조사를 펼치고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특히 2023년은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설립 된지 10주년이 되는 해로써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세계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다양한 방안들이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개별국가 차원에서는 미국이 2004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였고, 2006년에는 일본이 「납치 문제, 기타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 침해문제에의 대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한국은 2016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였으며 유럽연합의 경우 지속적으로 북한인권결의 공동 제안국으로 적극 참여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구상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주요한 정책 아젠다로 제시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인권 문제 제기에 대해 북한은 자신들의 체제를 전복(顛覆)시키기 위한 미국 주도의 정치적 음모라고 비난하고 있다. 또한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 침해에 대해 국제사회가 김정은의 형사책임을 논하는 것을 두고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북한은 이처럼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압박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 일부 개선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국제적 인권 규범을 자기식으로 수용해 법제화하고는 있지만, 북한 사회의 현실은 인권침해의 일상화가 여전한 상황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최근 증언에 따르면 김정은 시대의 북한의 인권 상황은 일부 개선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서도 공개처형은 이어지고 있는 반면, 구금 시설에서의 고문 및 가혹행위는 줄어들고 있다는 일부 증언도 수집되고 있다. 또한 교육 분야와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 관련 분야 시설 및 처우 개선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지만 코로나19 발생 이후 방역을 빌미로 한 사회 통제와 식량 및 건강과 관련해서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더해지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집권 10년이 넘는 김정은 시대에 북한의 인권 상황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김정은 시대 전반적인 북한의 인권 실태를 조망함으로써 북한인권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대내외적 공감대 확산과 향후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의 노력과 대응 방안 마련에 있어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북한의 실태를 다루는 보고서는 북한 원자료의 부족, 증언 간의 불일치 등 자료 확보의 한계로부터 발생하는 정보의 신뢰성 확보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 보고서에서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통일연구원에서 수행한 북한이탈주민 심층면접 자료와 더불어 국제기구 자료 등을 확보하여 최대한의 객관성을 담보하고자 했다. 아울러 이번 보고서는 김정은 시대의 북한인권 실태 전반을 다루는 총괄보고서와 북한의 구금시설과 재판과정을 포함한 사법적 권리, 식량권, 건강권, 여성과 아동을 중심으로 하는 취약계층 등 총 4개의 세부보고서가 시리즈 형태로 발간되어 김정은 시대의 북한인권 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 II

# 김정은 시대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과 북한의 대응





## II. 김정은 시대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개선 노력과 북한의 대응

### 1. 책임규명·인권제재와 북한의 대응 수위 강화

김정은 집권 이후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유엔을 중심으로 한 책임규명(accountability) 활동이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COI)는 2014년 2월 17일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핵심은 책임규명에 대한 판단이었다. COI는 인도에 반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가 북한에서 자행되어 왔으며 현재(보고서를 발표한 시점)에도 자행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sup>1)</sup> COI 활동 종료 이후 유엔은 책임규명을 위한 후속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첫째, 2015년 6월 23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가 개소하였다. 둘째, 책임규명 독립전문가그룹(independent experts on accountability)이 임명되어 활동하였다. 셋째,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는 ‘증상화된 정보 및 증거 저장소’ 구축을 통해 책임규명을 위한 자료를 축적하고 있다.<sup>2)</sup> 넷째, 이밖에도 유엔은 2019년과 2021년 인권최고대표의 「북한 책임규명 증진」 보고서 제출,<sup>3)</sup>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책임규명 방안 탐색’ 워크숍 개최(2021.12.8.) 등을 통해 책임규명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다.<sup>4)</sup> 한편, 유엔 안보리는 2014~2017년까지 북한인권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다루었고, 2020~2022년에는 비공개로 논의하였다.

1) UN Doc. A/HRC/25/63 (7 February 2014), paras. 74~79; UN Doc. A/HRC/25/CRP.1 (7 February 2014), paras. 1166~1210.

2)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책임규명 증진,” <<https://seoul.ohchr.org/index.php/ko/node/9>> (검색일: 2023.2.1.).

3) UN Doc. A/HRC/40/36 (7 March 2019); UN Doc. A/HRC/46/52 (11 January 2021).

4) 김수암, “국제사회 북한인권 동향과 대북인권정책 추진 방향,”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22-19 (2022), p. 2.

미국, 영국, 유럽연합은 북한인권 개선 활동의 일환으로 인권침해를 한 북한의 기관 및 개인을 제재하였다. 미국은 2016년 제정된 「북한제재 및 정책강화법(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과 2016년 3월 16일 발동된 대통령 「행정명령 13722 (Executive Order 13722)」을 근거로 북한인권 침해자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 법령들에 따라 미국은 김정은과 김여정을 비롯하여 개인 32명과 기관 13곳에 미국 입국 금지, 자금 동결과 거래 중단 등의 경제 제재를 부과하였다. 유럽연합과 영국은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 제재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인권제재를 부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20년 12월 7일 채택한 「글로벌 인권제재 체제 (Global Human Rights Sanctions Regime)」에 따라 2021년 3월 22일 6개국의 개인 11명과 단체 4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정경택(국가보위상), 리영길(사회안전상), 중앙검찰소를 포함시켰다. 유럽연합은 북한 관리 및 기관에 대한 인권제재를 2023년 12월 8일까지 연장하였다. 영국은 2018년 「제재 및 자금세탁방지법(Sanctions and Anti-Money Laundering Act 2018)」과 2020년 「글로벌 인권제재 규칙 2020(Global Human Rights Sanctions Regulations 2020)」을 제정하였다. 영국은 이 법령들을 근거로 2020년 7월 6일 4개국의 개인 47명, 2개 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정치범 수용소 내 인권 유린과 관련하여 인민보안성(현 사회안전성) 교화국과 국가보위성 7국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북한은 COI 보고서 발표 이후 인권은 국권(國權)이라는 논리로 대응하고 있다. 자주권과 연계하여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제기를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 제도 전복 시도, 북한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며 책임규명, 인권제재에 대해 반발하는 양상을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2019년 11월 20일에는 대응조치법을 제정하였다.<sup>5)</sup> 이 법은 비우호적인 행위를

열거하면서 ‘공화국의 존엄을 모독하는 행위’를 첫 번째로 제시하고 있다(제3조). 비우호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미국, 유럽연합, 영국의 인권 제재 법제에서 볼 수 있는 여행 금지, 자산동결 등의 경제제재에서 더 나아가 경제교류·문화교류 단절, 심지어는 외교관계의 단절까지도 규정하고 있다(제4조). 대응조치법의 제정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제기, 책임규명, 인권제재에 대한 수사(修辭)적 대응에서 더 나아가 제도적 대응에 나서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 형법(2022.5.17. 개정)은 공화국 존엄모독죄에 대해 최고 사형까지 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64조). 이 규정은 종전 형법(2015.7.22. 개정)에는 없던 규정이다.

〈그림 11-1〉 인권 침해 북한 개인·기관 제재



5) 본 보고서의 북한 법규는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북한법령집에서 볼 수 있다.

## 2. 국제사회의 정보 유입 활동 강조·강화와 북한의 사상·정보 통제

미국은 2018년 7월 「2017년 북한인권 재승인법」<sup>6)</sup> 제정을 통해 북한 인권법을 2022년까지 효력을 연장하면서 대북방송을 하는 민간단체들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였다(Sec.4). 그리고 정보 전달 매체로 USB, 소형 SD 카드, 오디오 플레이어, 비디오 플레이어, 핸드폰, 와이파이, 무선 인터넷, 인터넷, 무선 통신, 기타 전자 형태의 미디어를 추가하였다(Sec.5). 2022년 12월 23일에는 「북한 검열 및 감시에 대응하는 2021년 오토 워비어법」<sup>7)</sup>을 제정하였다. 워비어법은 북한 정부 또는 노동당의 검열에 연루되었거나 책임이 있는 외국인에 대한 자산동결, 비자 무효화 등의 제재 부과(Sec.5), 북한 내 정보자유 증진 및 검열·감시에 대한 대응(Sec.7)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미 의회 ‘톰 란토스 인권위원회(Tom Lantos Human Rights Commission)’는 이례적으로 2021년 4월 16일 한국의 인권상황과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하면서 대북전단금지 문제를 다루었다. 미 국무부는 2021년 각 국가별 연례인권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한국의 인권과 관련하여서는 표현의 자유 제한 항목에서 2020년 12월 29일 이루어진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사실과 동 법률 시행 이후 관련 단체에 대한 수사 진행을 기술하였다.<sup>8)</sup> 키타나 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2021년 북한인권상황 보고서에서 전단살포 금지와 처벌을 규정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재검토를 권고하였다.<sup>9)</sup>

국제사회가 정보접근권 증진 차원에서 북한 내 정보유입을 강조·강화하는 것과는 반대로 북한은 사상통제·정보통제 관련 법규범을 강화하고

6) North Korea Human Rights Reauthorization Act of 2017.

7) Otto Warmbier Countering North Korean Censorship and Surveillance Act of 2021.

8) U.S. Department of State, *2021 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s: South Korea*, pp. 7~8.

9) UN Doc. A/HRC/46/51 (2 July 2021), para. 41.

있다. 북한 노동당은 1974년 제정한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을 위한 10대 원칙을 2013년 6월 19일 당의 유일적 령도체계확립 10대원칙으로 개정하였다. 6개월 후인 2013년 12월 장성택 처형 사건이 발생하였고 공포 통치가 이어졌다. 이어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년), 청년교양보장법(2021년), 혁명사적사업법(2021년), 평양문화어보호법(2023년)이 제정되었다. 특히,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경우에는 한국 영화나 녹화물 유입·유포 행위, 시청·열람 행위에 대해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규정들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표 II-1〉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사형 규정<sup>10)</sup>

	위반 행위	처벌
제27조	남조선 영화나 녹화물, 편집물, 도서를 유입·유포한 경우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남조선 영화나 녹화물, 편집물, 도서를 집단적으로 시청·열람하도록 조직하였거나 조장한 경우	사형
제28조	많은 양의 적대국 영화나 녹화물, 편집물, 도서를 유입·유포하였거나 여러 사람에게 유포한 경우 또는 집단적으로 시청·열람하도록 조직하였거나 조장한 경우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제29조	많은 양의 성녹화물 또는 도서, 사진, 그림 같은 것을 유입·유포하였거나 여러 사람에게 유포한 경우 또는 집단적으로 시청·열람하도록 조직하였거나 조장한 경우	사형

10) 한명섭, “북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관한 고찰,” 『북한법연구』, 제27호 (2022), pp. 117~118을 재구성.

### 3. 인도지원·개발협력을 통한 북한인권증진 활동

유엔 안보리는 2016년 2321호 결의를 채택하면서 대북제재 위원회(1718위원회)가 사안별로 제재 면제를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sup>11)</sup> 이후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었다.<sup>12)</sup> 유엔 대북제재 위원회는 2018년 8월 「북한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면제 가이드라인」을 채택하였다.<sup>13)</sup> 키타나 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이사회 제49차 회기에 제출한 2022년 북한인권상황 보고서에서 대북제재가 북한 주민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재를 재검토할 것을 유엔 안보리에 권고하였다.<sup>14)</sup>

인도주의 기구로 구성된 유엔 북한팀(UN Country Team)은 2016년 9월 1일 북한과 합의하여 「유엔과 북한간의 협력을 위한 5개년 전략계획(Strategic Framework for Cooperation between UN and the DPRK 2017-2021)」을 채택하였다.<sup>15)</sup> 유엔 북한팀과 북한은 UNSF(UN Strategy Framework)에서 ① 식량 및 영양안보, ② 사회개발 서비스, ③ 복원력과 지속가능성, ④ 데이터와 개발 관리 등 네 가지를 전략적 우선순위로 제시하였다.<sup>16)</sup> 특히, UNSF는 이 네 가지 우선순위를 제시함에 있어 통합적 접근 방식을 취하면서 인권 중심의 접근법 채택을 제시하였다.<sup>17)</sup>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임명 이후 첫 번째로 제출한 북한인권상황 보고서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책임규명

11) UN Doc. S/RES/2321(2016), para. 46.

12) UN Doc. S/RES/2371(2017), para. 26; UN Doc. S/RES/2375(2017), para. 26; UN Doc. S/RES/2397(2017), para. 25; UN Doc. S/RES/2397(2017), para. 25.

13) Guidelines for Obtaining Exemptions to Deliver Humanitarian Assistance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14) UN Doc. A/HRC/49/74 (March 2022), para. 52.

15) DPRK & UN Country Team, *Strategic Framework for Cooperation between UN and the DPRK 2017-2021* (2016), p. 4, p. 9.

16) *Ibid.*, p. 8.

17) *Ibid.*, pp. 8~9.

활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책임규명과 협력의 동시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특별보고관은 책임규명과 협력이 상호 보완적 관계라는 인식 고취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sup>18)</sup>

#### 4. 이산가족·역류자 사안의 인권적 접근 강조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 결의는 이산가족 문제를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로 다루고 있다. 이산가족이 고령화되고 사망자가 증가하면서 2015년 이후 채택된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와 2018년 이후 채택된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는 이산가족 사안의 ‘긴급성’에서 ‘긴급성 및 중요성’으로, 이산가족 사안의 긴급성 및 중요성을 ‘주목’하는 것에서 ‘강조’하는 것으로 대응의 수위를 강화하였다.<sup>19)</sup> 키타나 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016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북한인권상황 보고서에서 이산가족 문제는 인권침해 문제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sup>20)</sup>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는 2016년 「분단의 아픔: 인권으로 접근한 한반도 비자발적 가족 분리(Torn Apart: The Human Rights Dimension of the Involuntary Separation of Korean Families)」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미국은 2022년 12월 23일 「이산가족상봉법(Divided Families Reunification Act)」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은 재미이산가족의 상봉을 위해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와 협의할 것,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재미이산가족 대표들과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Sec.2). 유엔이 김정은 집권 이후 국군포로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유엔 총회는 2021년 북한인권결의에서 처음으로 미 귀환 국군포로의 인권 침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sup>21)</sup> 2022년 유엔

18) UN Doc. A/77/522 (13 October 2022), para. 34.

19) 한동호 외, 『윤석열정부의 통일·대북정책: 국정과제 추진방향』, (서울: 통일연구원, 2022), pp. 140~143.

20) UN Doc. A/HRC/31/70 (19 January 2016), para. 13.

21) UN Doc. A/RES/76/177(10 January 2022), preamble. *Noting with concern* the allegations of

총회 북한인권결의에도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sup>22)</sup> 그러나 다른 인권 사안에 비해 구체적인 권고는 하지 않고 있다.

유엔 총회는 2017년 북한인권결의 채택 시 억류자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이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당사국임을 지적하며 동 협약상의 영사접견권을 북한 억류자들에게 제공할 것, 억류자들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가족과 연락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하였다.<sup>23)</sup> 이후 채택된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에 제출된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북한인권상황 보고서에 같은 내용이 포함되고 있다.

## 5. 북한의 인권 사안별 선택적 수용·협력

김정은 시대의 북한은 책임규명, 인권제재에 있어서는 부인·반발하는 것과는 달리 여성, 아동, 장애인 관련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호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상반된 모습은 국제인권조약 가입·비준, 국제인권조약상의 보고서 제출 의무, 국가별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시 유엔 회원국 권고에 대한 수용, 이산가족 사안, 억류자들에 대한 영사접견권 보장과 석방에서도 나타났다. 인권법제에 있어서도 이 같은 양태를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응조치법 제정과 형법 개정을 통해 인권 문제 제기를 존엄에 대한 모독으로 대응하고, 사상·정보 통제를 강화하는 법규들을 제정하였다. 반면 인권 보호 취지의 법규들도 제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북한은 2021년 구타행위 방지법을 제정하였다. 인권 기구로 국제인권협약이행민족위원회(2015년), 사회과학원 산하 인권문제연구소(2016년)를 신설하였다.

continued violations of the human rights of unrepatriated prisoners of war and their descendants,

22) UN Doc. A/RES/77/226 (9 January 2023), preamble.

23) UN Doc. A/RES/72/188 (19 January 2018), para. 15 (g).

〈표 II-2〉 김정은 시기 인권 사안에 대한 북한의 상반된 양태

		불수용·미이행	수용·이행
인권조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종차별철폐협약 미가입</li> <li>• 고문방지협약 미가입</li> <li>•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 미가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 매매·아동 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 의정서(2014.11.10.)</li> <li>• 여성차별철폐협약 2개 조항 유보 철회 (2015.11.23.)</li> <li>•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2016.12.6.)</li> </ul>
보고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유권규약 2차 보고서 제출 (2000.3.20.) 이후 미제출</li> <li>• 사회권규약 2차 보고서 제출 (2002.4.12.) 이후 미제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차별철폐협약 2·3·4차 통합 보고서 제출(2016.4.11.)</li> <li>• 아동권리협약 5·6차 통합보고서 제출(2006.5.13.)</li> <li>• 장애인권리협약 최초보고서 제출 (2018.12.19.)</li> </ul>
취약계층 보호		<p>*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방북 불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 출산휴가 확대(2015.6.30.)</li> <li>• 자발적 국가 검토(Voluntary National Review: VNR) 보고서에서 '양성평등 및 모든 여성과 소녀들의 권리 보장'을 목표 가운데 하나로 제시(2021.6.)</li> <li>• 유엔 장애인 권리 특별보고관 방북 허용(2017.5.)</li> </ul>
이산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합의한 2018년 평양공동선언 미이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년 판문점선언 합의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 (2018.8.20.)</li> </ul>
억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국민 영사접견권 거부</li> <li>• 한국 국민 6명 억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캐나다 시민권자 영사접견권 보장, 모두 석방</li> </ul>
UPR 권고	1차 (2009년)	15개 유념, 65개 거부	81개 수용, 6개 부분 수용
	2차 (2014년)	58개 유념, 93개 거부	113개 수용, 4개 부분 수용
	3차 (2019년)	56개 유념, 74개 거부	132개 수용



III

# 분야별 실태





## III. 분야별 실태

### 1. 정치적·시민적 권리

#### 가. 공개처형

국가기관에 의한 생명의 박탈은 법률로써 엄격하게 통제되고 제한되어야 하며, 당사국의 국내법으로 합법적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초법적·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은 금지된다. 북한의 공개처형은 사회일탈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경각심과 공포심을 통한 사회통제 수단으로 활용되어왔다.

#### (1) 공개처형 지역

혜산, 함흥, 청진 등의 국경지역 도시에서 공개처형 빈도가 높게 발생하였다. 이는 조사 대상인 북한이탈주민의 출신 지역이 국경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이탈주민의 출신 지역은 함경북도와 양강도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수도 평양에서도 공개처형이 발생하였는데 김정은 집권 초기인 2013~2015년에 집중되었다. 집권 이후 권력 공고화 및 공포통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 사회 외에 구금시설에서도 공개처형이 실시되었다. 2016년 4월 교화소 도주 기도자에 대한 공개처형이 이루어졌으며, 참관을 하지 않는 수감자들은 출소일을 늦추겠다고 위협하여 강제 참관하였다고 한다.

#### (2) 공개처형 사유

김정은 집권 이후 간부들의 부정행위 및 정책실패, 김정은의 지시나 노동당 정책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 초급당 비서, 관리위원장 등 하급 단위 간부들에 대한 공개처형이 이루어졌다. 2014년 군대 내에서 구타

하지 말라는 김정은의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사단참모장 등 4명이 출당 및 직위해제 후 공개처형되었다. 2015년에는 평양에서 대동강 자라공장 지배인과 당비서 처형이 반당적 행위, 수령 유훈교시 말살, 부정부패를 이유로 공개처형되었다. 장성택 관련자에 대한 공개처형도 목격되었다.

종교활동을 반국가범죄로 간주하여 공개처형을 실시하고 있다. 2015년 황해북도 길성포에서 기독교 전파를 이유로 여성 2명이, 반체제 피라살포 유통을 이유로 여성 1명이 공개재판을 받은 후 처형되었다. 2018년 평안남도 평성에서는 성경소지를 이유로 2명이 공개처형되는 것이 목격되었다.

국가재산 및 당국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물품에 대한 절도 및 밀수 관련 공개처형이 이루어졌다. 특수강을 중국에 밀무역하다가 처형된 사례와 배급으로 나가야 하는 식량을 빼돌려 처형된 사례가 있었다. 평양에서 유명한 ‘조직폭력배’와 같은 패거리가 지하철에서 호위국 후방일군의 물건을 훔쳤는데 국가기밀문건(호위국관리 초대소 물자명세)이어서 처형된 사례도 있었다.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은 강력범죄 사건에 대해 가해자를 공개처형하는 경우가 목격되었다. 2014년에서 2015년 사이에 양강도 혜산시 아동납치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 방침까지 하달되었으며 범인은 공개처형되었다. 2014년부터 2015년경에는 성매매 업소를 차려놓고 포주 역할을 했던 여성에 대해 처형이 이루어졌다. 2018년에는 장생이라는 군부대 마을에서 살인죄로 공개처형이 실시되었다. 중앙재판소에서 나와 피의자의 인적 사항과 범죄행위(미성년자 성폭행)를 밝히고, 법조항 몇 항에 의해 총살형에 처한다고 공개재판을 한 뒤 형을 집행한 사례도 있었다. 2018년 함경북도 온성군에서는 군당 책임비서 아들 살해사건이 발생하였는데 북한은 이 사건을 당 일군가족이 살해된 특대형 사건으로 간주하여 군중을 총살 현장에 동원하였다. 2018년 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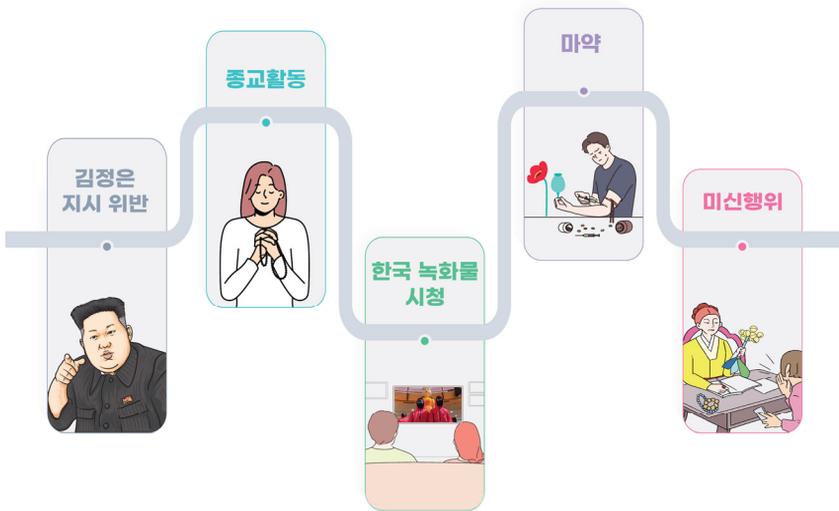
31일 공개처형 현장을 목격한 북한이탈주민은 1주일 이상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고 한다.

김정은 집권 이후 주민들에 대한 사상통제와 정보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녹화물 시청을 사유로 하는 공개처형이 발생하고 있다. 마약 관련 공개처형 사례도 꾸준히 수집되고 있다. 2014년 함경북도 청진시 광장에서 한국 드라마 유포 및 마약 밀매 죄목으로 1명이 총살되었으며, 2014년 양강도 혜산시 연봉동에서는 남성 2명이 한국 영화 유포와 성매매 장소 제공의 이유로 총살되었다. 2014년 10월 양강도 혜산시 연봉동 비행장에서 남성 3명이 한국 녹화물 유포행위로 총살되었고, 2015년 3월 평안남도 평성시에서 30~40대 남성 5명이 한국 녹화물 시청과 마약 거래 혐의로 공개재판 후 총살되었다. 2017년 양강도 혜산시 연봉동 비행장에서 남성 1명이 한국 녹화물 유포행위로 총살되었고, 2017년 2월 황해북도 벽성군에서 20여 명이 한국 녹화물 시청·유포행위와 마약 거래를 이유로 총살되었다. 북한은 2013년 형법을 개정하면서 아편재배 및 마약제조 관련 범죄에 대해 사형을 법정최고형으로 추가하였다. 그리고 2022년 형법 개정 시에는 마약범죄 죄목을 종전 4개에서 8개 조문으로 늘렸고, 이 가운데 사형을 부과할 수 있는 죄목은 종전 2개 조문에서 3개 조문으로 늘렸다. 2021년 7월 1일에는 마약범죄방지법을 제정하였다. 이 같은 마약통제 법제를 볼 때 향후 북한에서 마약 관련 공개처형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신행위를 이유로 하는 공개처형도 실시되었다. 한 북한이탈주민은 2018년 미신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공개처형이 이루어졌다고 증언한다. 다른 북한이탈주민도 이와 유사하게 2018~2019년에 미신행위에 대한 정책적 통제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공개처형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2019년에도 미신행위를 이유로 공개처형이 있었다고 한다.

한편, 자유권규약은 18세 미만의 자가 범한 범죄에 대한 사형선고와 임산부에 대한 사형집행을 금지하고 있다. 한 때 이 같은 규정이 준수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되었으나 최근에는 수집되지 않고 있다.

### 〈그림 III-1〉 공개처형 사유



#### (3) 김정은의 관대함 부각 기회로 활용

북한은 김정은의 관대함을 부각시키는 기회로 공개처형을 활용하였다. 김정은 집권 초기에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졌는데 주동자는 처형하는 반면에 사건 연루자들에게는 갱생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2013년 불순녹화물 처벌과 관련하여 “김정은 원수께서 당신들의 죄를 0으로부터 시작하라고 했기 때문에 당신들을 무죄로 선포한다”는 방침을 낭독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2013년 다른 사건에서는 성매매 관련 사건의 주동자를 처형하고 나머지는 감형 및 석방하였다고 한다.

#### (4) 비밀처형으로의 전환

통일연구원 조사 결과 북한에서 공개처형이 감소하였다는 증언들이 수집되었다. 그 시기는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2008년 이후 공개처형이 사라졌다고 한다. 2019년 탈북한 다른 북한이탈주민도 2008년 이후 공개처형이 사라졌다고 증언하였다. 2019년 탈북한 또 다른 북한이탈주민은 2012~2013년 공개총살을 목격한 이후 공개처형이 없었다고 증언하였다.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2015~2016년 마지막으로 공개처형을 봤고, 2018년 이후로는 본 적이 없다고 한다. 공개처형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비판이 영향을 미친 것이 하나의 요인으로 파악된다. 한 북한이탈주민은 유엔이 공개처형 문제를 세계 비판하여 공개처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이탈주민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는 점에서 이들의 증언만으로 공개처형이 감소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북한에서는 여전히 공개처형이 발생하고 있다. 2019년에도 미신행위를 이유로 공개처형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2022년 10월에 양강도 혜산시에서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시청하다 단속된 2명의 10대 학생과 계모를 살해한 학생 1명이 공개처형되었다고 보도하였다.<sup>24)</sup> 또한 데일리NK는 2022년 9월 말 강원도 원산시에서 50대 남성이 불법 의약품 제조를 이유로 공개처형되었다고 보도하였다.<sup>25)</sup> 공개처형이 비밀처형 또는 비공개처형으로 전환되는 양상도 나타났다. 김정은 집권 이후 정치적 범죄(말 반동, 한국 관련 간첩활동, 수령 비판 등)에 대해서는 공개처형보다는 비밀처형을 실시한다는 증언이 수집되었다.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2014년경 탈북 브로커를 하던 동네 아주머니가 비공개총살되었다고 증언하였다.

24) "한국영화 유통 북한 고3 두명 공개처형," 『자유아시아방송』, 2022.12.2.

25) "북한서 여전히 '공개처형' 이뤄져...공포감에 떠는 주민들," 『데일리NK』, 2022.11.7.

## 나. 구금시설 내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

북한에는 국가보위성과 사회안전성이 운영하고 있는 집결소, 구류장, 노동단련대, 노동 교양대, 노동교화소 등 여러 형태의 구금·교정시설이 존재하고 있다. 집결소는 여행구역 이탈자, 여행기일 경과자, 부랑아, 사건 계류자, 강제송환 탈북자 등을 조사하는 수용하는 곳이다. 구류장은 범죄혐의자가 재판을 받기 전에 구금되어 조사를 받는 곳이다. 노동단련대는 재판소에서 형벌로서 노동단련형(6개월 이상 1년 이하)을 선고받은 자를 수용하는 시설이고, 노동교양대는 노동교양처벌(5일 이상 6개월 이하)을 받은 자를 수용하는 시설이다. 교화소는 재판소에서 노동교화형을 선고 받은 자를 수용하는 곳이다.

북한 주민들은 재판 이전 형사사건 처리 과정에서, 또한 재판 이후 형벌 집행 과정에서 고문과 가혹행위,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구금·교정시설에서 영양·위생·의료 상황은 매우 열악하다. 이와 같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에 이르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

### (1) COI 보고서 발표 이후 고문·가혹행위·강제노동 및 사망자 감소

북한은 2013년 이후 구금·교정시설에 인권유린을 금지하라는 방침을 지속적으로 하달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 예로 2013년 보안서 예심을 경험한 북한이탈주민은 예심원이 법무해설집을 보여주었는데 김정은이 ‘법 정치’를 하겠다며 구금시설에서 때리거나 인권유린을 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2017년 보위부에 수감되었던 북한이탈주민은 계호원이 “세계에서 인권을 가지고 떠들기에 법이 좋아져 복인 줄 알라. 작년까지는 말을 듣지 않으면 벌주고 때렸는데 이제는 손 하나 안건든다”고 증언하였다. 이는 2013년 COI 설립과 2014년 COI의 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강화된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요구를 북한 당국이 의식한 조치로 평가된다.<sup>26)</sup>

이후 구금시설 내 고문 및 가혹행위 등을 인권침해로 인식하고 대응하는 등 변화 양상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수집되었다. 한 북한이탈주민은 2017년 헤산시 구류장에서 “인권유린으로 북한이 타격받았을 때”라 가혹행위가 없었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노동단련대에서 구타나 폭행을 하지 말라는 김정은 방침이 있었다고 들었으며, 실제 보안원들의 구타가 감소하거나 없었다는 다수의 증언이 2018년과 2019년 조사를 통해 수집되었다. 2014년과 2016년 두 차례 삼지연 노동단련대를 경험한 북한이탈주민은 2014년에는 단련대에 없었던 “인권유린을 금지한다”는 문구를 2016년에는 목격하였다고 증언하였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수감자에게 노동을 시키지 않는다는 증언들이 수집되었다. 2019년 4월 구류장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재판 전 구류장에 수감된 사람은 ‘형 대기 중인 사람’으로 노동을 시키지 않는다고 증언하였다.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까지 보위성 산하 구금 시설에 수감되어 조사를 받았다는 북한이탈주민도 강제노동을 시키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구금시설 내 사망자가 감소하였다는 증언도 수집되었다. 해당 북한이탈주민은 2015년 평안남도 개천교화소 수감 시 월 평균 3~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나 가족면회를 많이 허용하는 등 관리를 잘하라는 지시로 인해 사망자가 감소하였다고 증언하였다.

2021년 제정된 구타행위방지법은 사회안전기관(사회안전성)을 비롯한 법기관이 구타행위를 단속하지 않거나 신고를 받고도 조사처리를 바로 하지 않을 경우 또는 직무집행과정에서 구타행위를 한 경우 무보수노동, 강직, 해임 등의 처벌을 부과하고 있다(제22조). 여기에는 북한 구금·

26) COI는 2014년 2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인도에 반한 죄 위반자들이 형사책임을 져야 하며, 그 방법으로 유엔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거나 유엔 특별재판소(ad hoc tribunal)를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UN Doc. A/HRC/25/63 (7 February 2014), para. 87; UN Doc. A/HRC/25/CRP.1 (7 February 2014), para. 1218.

고정시설에서의 고문 및 가혹행위 감소, 미결수용자에 대한 노동금지 등의 실태 변화가 일부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2) 고문 및 가혹행위 지속

신체에 대한 구타, 고정자세 강요 등의 가혹행위 발생이 김정은 시대에도 지속되었다. 2015년 2월 인신매매 혐의로 함경북도 온성군 보위부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북한이탈주민은 조사 과정에서 구타를 당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몽둥이로 맞아 온몸이 멍이 들고 살이 다 썩어나간 사람들도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2016년 5월 양강도 삼지연시 보위부 집결소에서 8일 동안 조사를 받았다는 북한이탈주민은 한국행 기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심한 폭행을 당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자신의 아버지는 폭행을 당한 정도가 훨씬 심해 치아가 다 나가고 눈이 터질 정도였다고 한다. 2016년 함흥교화소 수감 시 작업반에서 눈초리작업 계획목표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 각자로 종아리를 구타당한 사례와 2017년 함경북도 온성군 보위부 구류장에서 고정자세를 강요받고 조금만 움직여도 못이 달려있는 각목으로 구타를 당해 허리와 등에 심한 상처가 난 사례도 수집되었다. 2018년 양강도 보위부 집결소 수감 시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구타 등의 가혹행위와 고정자세를 강요받고 간지러운 곳을 긁는 정도의 움직임조차 허용되지 않았다는 증언도 있다. 2019년 4월 구류장에서 근무했던 북한이탈주민은 구류장에서 ‘형 집행 중인 사람’이 죄수와 같은 대우를 받고 고정자세 등의 가혹행위를 당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고정자세 유지가 너무 힘들어 움직이면 계호원이 머리를 잡아 벽에 박으며 구타를 당하기도 한다. 2015년 보위부 구류장 수감 시 70살이 넘는 노인에게도 잘못된 이 있으면 앓았다 일어나기 등의 가혹행위를 강요했다는 증언도 수집되었다. 남성 수감자는 여성 수감자에 비해 더 많이 구타를 당한다고 한다.

보안원이 직접 구타하지 않고 수감자에게 대신 구타하게 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한 북한이탈주민은 보위지도원들이 더럽다고 수감자에게 손대지 않고 같이 수감된 감방 반장에게 때리게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수감자에게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의 자해행위를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 (3) 강제노동

집결소에서 과도한 노동과 강제노동이 지속되고 있다. 한 북한이탈주민은 집결소에 노동력이 필요한 경우 정해진 기간보다 더 오래 수감되었다고 증언하였으며, 2015년 함경북도 청진시 나남구역 집결소에 수감되었던 북한이탈주민은 하루 평균 15~16시간 정도의 보도블럭 생산 작업을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2017년 8월 함경북도 청진시 라남구역 농포 집결소에 수감되었던 북한이탈주민은 새벽 5시에 일어나 집결소 내 시멘트 공장에서 강제노동을 하였으며, 2018년 7월부터 8월까지 함경북도 청진 도집결소에 수감되었던 증언자는 새벽 5시부터 저녁 8시까지 농사일, 건설장일, 축사일 등을 하였다고 한다.

단련대에서의 강제노동 사례도 지속적으로 수집되고 있다. 한 북한이탈주민은 단련대 1개월형을 받고 2013년 대흥단군 흥단수라는 강에서 돌로 강둑쌓기 노동을 했는데 매우 힘들었다고 증언했으며, 다른 북한이탈주민은 2014년 평양 용성구역에서 새벽부터 나와서 구호를 외치며 아파트 짓는 일을 하는 단련대생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하였다. 2018년 8월 삼지연시 보안서에서 노동단련대 1개월 처분을 받아 건물 도배, 보안서 건물 담장 쌓기, 삼지연시 경기장 땅 다지기, 김매기 등의 노동을 하였는데 단련대 안에서 숙식하고 외부 일을 나갈 때는 감독관이 동행하였다는 증언도 있다. 2019년 2월부터 5월까지 회령시 단련대에 수감되었던 북한이탈주민은 회령시 임산작업소에서 나무를 채벌하여 빈 땅을 개간하였다고 한다.

#### (4) 열악한 영양·위생·의료 상황과 사망자 발생

열악한 위생환경 및 영양상태로 인해 감염병에 매우 취약하여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교화소에서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였다. 2010년 겨울 전거리교화소 내 열병 발생으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함흥교화소에서도 감염병 발생으로 다수 사망한 사례가 2014년 조사로 확인되었다. 2008년과 2015년 두 차례 개천교화소 수감 경험이 있다는 북한이탈주민은 2008년에 비해 2015년의 교화소 영양·위생·의료 상황이 달라진 것이 없었다고 증언하였다. 옥수수와 콩 한 덩어리 정도가 식사로 나왔기 때문에 가족이 면회식을 넣어 주어야 버틸 수 있었는데 면회를 오지 않은 수형자들이 많았다고 한다. 2018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2016년 함흥교화소 복역 중 질병으로 사망한 수형자 2명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수형자 2명은 자궁암, 척추결핵을 앓았는데 교화소에서 진료를 봐주지 않아 사망하였다고 한다.

노동단련대의 영양·위생·의료 상황도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16년 8월 양강도 삼지연시 노동단련대 수용 경험이 있다는 북한이탈주민은 단련대에서 세 끼 식사를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삶은 통강냉이와 시래기국이 전부였기 때문에 버티기가 매우 힘들었다고 한다. 2015년 3월부터 2개월간 함경북도 온성군 노동단련대에 있었다는 북한이탈주민도 강냉이밥, 장국, 염장시래기국 등이 식사로 제공되었다고 증언하였다.

집결소의 영양·위생·의료 상황도 열악하다. 2014년 4월부터 한 달간 양강도 혜산시 집결소에 있었다는 북한이탈주민은 식사로 통강냉이가 제공되었으며, 고열로 힘든 상태에서도 계속 일을 해야 했다고 증언하였다. 2014년 혜산시 집결소에 구금되었던 또 다른 북한이탈주민도 통강냉이와 시래기국이 식사로 제공되었는데 양이 많지 않아 수감자 모두 배고파했다고 증언하였다.

구류장의 열악한 영양·위생·의료 상황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15년 2월 함경북도 온성군 보위보 구류장에 수용되었던 북한이탈주민은 식사로 누룽지, 김치, 콩나물이 제공되었으며 숟가락을 주지 않아 비닐로 숟가락을 만들어 사용했다고 한다. 2018~2019년에 구류장에 수감되었다는 북한이탈주민은 식사로 한 줌 정도의 옥수수를 소금과 함께 받았는데 식사 수준은 개도 안 먹을 정도라고 증언하였다.

구금시설 내 감염병 및 영양실조 등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 사망 사실을 가족에게 통보하지 않는다. 사체는 가족에게 인계하지 않고 ‘불망산’이라고 불리는 인근의 산에서 화장 또는 매장 처리하고 있다. 한 북한이탈주민은 자신의 어머니가 교화 13년형을 받고 복역 중 2014년 질병으로 사망했는데 시신을 가족에게 인계하지 않고 교화소에서 처리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예외적으로 단련대의 경우 질병으로 사망한 때에는 그 사실을 가족에게 통보하고 사체를 인도한 사례도 조사되었다. 교화소의 경우에는 이 같은 사례가 수집되지 않았다.

## 다. 정치범수용소

북한 당국은 ‘관리소’라고 불리는 정치범수용소를 운영하고 있다. 북한은 이를 체제유지를 위한 통치수단으로 활용해왔는데 김정은 시대에도 이어지고 있다. 인권침해의 종합판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만큼 수용자들은 심각하고 중대한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다.

### (1) 수용 사유와 사례

북한체제를 반대하거나 최고지도자를 모독하는 경우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고 있다. 한 북한이탈주민은 ‘말 반동’으로 몰리지 않기 위해 항상 언사를 신중히 했다고 증언하였다. 2018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김정은을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경우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된다고 증언하였으며,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김정은이 말하는 것을 왜곡하거나 김정은

방침을 왜곡적으로 집행하는 경우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된다고 증언하였다.

한국에서 돈을 받거나 한국으로 전화를 하는 것이 발각된 경우 관리소에 수용되기도 한다. 한 북한이탈주민은 2016년 양강도에서 33살 여성이 한국에서 돈을 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하다 적발되었으며, 여성의 남편은 ○○총국 초기복무 중이었는데, 부인이 관리소에 가게 되면서 제대하게 되었다고 증언하였다.

인신매매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교화소에 가게 되지만, 조직적 인신매매의 경우이거나 한국과 관련된 경우에는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 북한이탈주민은 2015년에 같은 여맹에 있던 한 여성이 70명을 인신매매로 넘기다가 적발되어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었다고 증언하였으며, 다른 북한이탈주민은 2015~2016년경 국경지역에 사는 동창생이 인신매매로 사람을 중국에 넘기는 일을 하다 보위성에 적발되어 관리소에 들어갔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2016년경 양강도 김정숙군 인민반장이 인신매매 과정에서 한국에서 보내준 돈을 받아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었다고 증언한 사례도 있다.

한국행을 기도하다 적발되면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된다는 증언들이 수집되었다. 2018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한국으로 가다가 잡히게 되면 정치범수용소에 가게 된다고 증언하였다. 2018년 탈북한 다른 북한이탈주민도 한국행을 기도하다 잡히면 재판 없이 보위성에서 바로 정치범수용소로 간다고 증언하였다.

북한 주민의 한국행을 알선하던 탈북 브로커가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된다는 사례들이 수집되었다. 한 북한이탈주민은 탈북 브로커였던 고모부가 2015년에 정치범수용소에 보내졌다고 증언하였다. 2017년 탈북한 한 50대 여성은 탈북 브로커였던 동생이 2016년에 보위부에 체포된 이후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치범수용소에 보내진 것으로 추측된다고 증언하였다. 다른 북한이탈주민은 2017년에 탈북 브로커였던 이

웃 주민이 한국으로 탈북한 부모의 부탁으로 북한에 남아 있던 그들의 아이를 중국 브로커에게 넘겨준 일이 발각되어 보위성에 잡혀갔고, 이후 정치범수용소에 보내진 것으로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종교활동도 수용 사유 가운데 하나이다. 한 북한이탈주민은 2018년 4월 중국에서 성경책을 받아 북한에서 사람들에게 배포 및 선교하다 보위성에 적발되어 관리소에 들어간 친척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한국과의 통화, 한국 영화 시청, 마약, 인신매매, 북한 실상 녹화물을 외국으로 유포한 행위도 수용 사유로 파악되고 있다. 2015~2016년경 지인이 정치범수용소에 갔다는 북한이탈주민은 수용 사유가 한국에 있는 친척과의 전화, 한국 영화 시청, 마약, 인신매매 등이었다고 증언하였다.

북한 주민들이 실제로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 북한이탈주민은 2013년에 양강도 보천군 거주하던 20대 남성이 가족의 한국행을 도와준 죄목으로 함경북도 명간 정치범수용소에 구금되었고 이후 도주하다 체포되어 사살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다른 북한이탈주민은 2016년에 양강도 혜산에 거주하던 40대 남성과 가족 5명(어머니, 당사자, 아내, 두 아이)이 검은 돈(한국 돈)을 소지한 것이 발각되어 반민족국가행위로 전원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또 다른 북한이탈주민은 자신의 남편과 사돈 관계인 여성이 중국에 북한에 대한 정보를 넘기고 시계를 받았는데 이것이 간첩행위로 인정되어 2015년에 정치범수용소에 보내졌다고 증언하였다. 이외에도 2015년 12월 집에서 성경책이 발견된 동네 주민이 정치범수용소에 보내진 것을 목격했다는 증언도 있다.

## (2) 수용 절차

정치범 피의자들을 체포하고 이들을 정치범수용소에 수용하는 법적 근거와 절차는 여전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다만, 정치범수용소 수용은 재판 없이 하고 국가보위성에서 단독으로 결정하며, 국가보위성이 정

치범수용소에 보낼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사회안전성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치범에 대한 처벌에는 본인 뿐만 아니라 그 가족,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친척까지도 연계해서 처벌하는 연좌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014년경 모녀가 한국행을 기도하다 붙잡히자 할머니까지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졌다는 사례가 있다. 다만, 예전에는 가족이 탈북하여 한국으로 갔다는 이유로 수용되는 사례가 많았으나 한국행이 많아지면서 일일이 그런 식으로 처리하기가 어려워 가족이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는 사례는 많이 줄었다는 증언도 수집되었다. 연좌제가 적용되어 가족이 수용되는 경우 아이들은 제외된다는 증언들이 수집되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당시 8세로 추정) 고아들을 키우는 숙박소에 들어갔다고 한다. 배우자가 정치범으로 몰렸을 때 이혼하게 되면 정치범수용소에 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3) 수용자 인권 실상

정치범수용소 수용자들은 ‘일하는 개미’에 비유될 정도로 인간 이하의 처우를 받고 있다. 초법적·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이 이루어지고 있고, 수용자들은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리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폭행 및 가혹행위가 만연해 있으며, 영양·위생·의료 상황도 열악하여 수용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기본적인 인권 가운데 하나인 가족권 침해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모 형제라도 함께 살 수 없으며 부부조차도 따로 떨어져 살아야 하고 결혼과 출산이 금지되며 부부관계를 못하도록 밤과 낮에 서로 번갈아가며 일을 시킨다는 증언들이 있었다. 2015~2016년경 이후부터는 정치범수용소 수용자들의 인권 실상에 관한 증언들이 수집되지 않고 있어 구체적인 실태 파악에는 한계가 있지만 실태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정치범수용소 인권 실태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 다른 방향의 증언도 수집되었다. 특히 함경북도 북창군에 소재했던 18호 관리소

(2006~2007년 개천으로 이전)의 경우 기존 정치범수용소 인권 실태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같은 내용은 부모와 함께 완전통제구역에 있다가 2019년 탈북하여 2020년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3명의 증언으로부터 수집되었다. 이들은 관리소에서 출생하였는데 이는 정치범수용소에서는 결혼과 출산이 금지된다는 일반적인 이해와 차이가 있다. 또한 관리소에 있었을 때 관리소를 지키는 직원(보안원) 자녀와 같은 학교에 다녔으며 차별 없이 교육을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관리소 내 독립적인 사법체계가 갖춰져 있었고 재판소, 노동교양대, 노동단련대 등도 존재한다고 증언하였다. 다만 이 증언은 18호 관리소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정치범수용소 전체의 실태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그림 III -2〉 북한 주민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 말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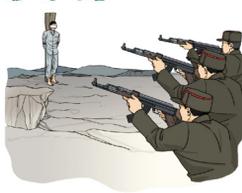
고문



신체에 대한 구타



공개처형



고정자세 강요



열악한 영양·위생·의료



강제노동



## 라. 사상·정보통제

북한은 사상통제와 정보통제를 체제유지의 핵심 요소로 간주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사상·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정보접근권이 침해를 받고 있다.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 정보통제가 강화되면서 정보접근권 침해 현상이 두드러지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한국 방송·녹화물 시청을 이유로 하는 공개처형, 구금·교정시설에서의 고문 및 가혹행위, 정치범수용소 수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 (1) 방송·녹화물 단속 및 처벌

북한 당국은 불법 녹화물 등 영상을 통한 정보 유통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다. 한국 녹화물 시청 및 유포행위의 경우 노동단련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지만 노동교화형을 선고받는다든 증언이 꾸준히 증가하였다. 중국 노래나 녹화물은 단련형을, 한국 드라마는 교화형을 받는다는 증언이 다수 있었다. 단속에 걸려 잡혀 들어가면 심문을 통해 반드시 유포자에 대한 자백을 받아낸다고 한다. 한국 영화를 보는 것이 빙두를 하다 단속된 것보다 더 강한 처벌을 받는데, 교화형·강제추방을 받거나 정치범수용소에 가게 된다는 증언이 있었다. 특히 음란물이 적발되면 최대 교화 10년형을 받기도 하고 추방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한국 녹화물을 시청·유포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는 포고문이 게시되었다는 증언과 적발되면 총살한다는 증언이 있었다. 2018년에 형법이 바뀌어서 한국 드라마 녹화물을 보면 5년 징역형이 주어진다는 증언도 있었다. 2019년부터 처벌이 엄격해졌는데 한국 영화는 1시간에 교화 1년이어서 한국 영화를 7시간 봤다고 교화 7년을 간 사람을 보았다는 증언도 수집되었다. 2019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한국 영상물 시청으로 받는 형량은 7년형에서 10년형이며, 10년형은 오히려 작은 형량이고 무기징역이나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지는 등 처벌 강도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고 한다. 2019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CD 보는 것을 눈감아줬던 예전과 달리 한국 드라마로 단속되면 무조건 보위부 취조를 받으며 전문적으로 유포했다는 게 밝혀지면 총살감이라고 증언했다.

방송·녹화물을 시청·유포하더라도 뇌물을 통해 처벌을 면제받는 경우들이 있다. 한 북한이탈주민은 녹화물 단속을 당했을 때 현장에서 돈을 낼 수 있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되어서 교회에 갈 사안도 며칠이나 몇 달 만에 풀려나며, 돈이 많은 집은 걸려도 돈으로 무마할 수 있다고 증언하였다. 이에 비해 한국 드라마나 영화는 뇌물이 통하지 않는다는 증언도 다수 수집되었다. 한 예로 2020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자신의 친구가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걸려서 3년 교화형을 받았다고 증언하였다.

방송·녹화물 단속은 '109상무'라는 조직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109상무는 단속을 위해 사전 공지나 영장 없이 가택수색을 하고 있다. 한 북한이탈주민은 모든 신경이 단속에 가 있을 정도로 109상무가 자국가택을 수색한다고 증언하였다. 인민반장이 문을 두드리고 보안원들이 불시에 집에 와서 숙박검열, 불순녹화물 단속을 한다는 증언이 다수 있었다. 2019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인민반 지원사업도 하던 모범세대여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검열받았는데 단속 때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강제로 들어가며, 검열에 걸렸을 때 당 위원회 통보 선에서 끝날 수도 있지만 심할 경우 안전부나 보위부에 가거나 추방당한다고 증언하였다. 단속에 대비하여 북한 영상물을 본 것처럼 미리 준비해 두거나 소리와 빛을 차단하였다는 증언도 다수 있었다. 영상물을 보는 기기도 CD에서 메모리, 휴대전화 칩으로 옮겨가는 추세이다.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CD로 봐서 걸리기 쉬웠으나 이제는 손톱만한 SD 메모리 카드로 보기 때문에 밖에서 문소리가 들리면 바로 숨긴다는 사례도 증언되었다.

처벌의 수위는 유기노동교화형, 노동단련형, 노동단련대, 공개처형, 강제추방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노동단련대에서 노동교화형으로 처벌 수준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단순시청에 비해 판매 및 유포행위를

보다 엄격하게 처벌하였다. 2018년을 전후하여 한국 녹화물에 대한 처벌 수위가 5년 정도의 노동교화형에서 8~10년으로 강화되었다는 증인들이 다수 수집되었다. 이는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정과 일정 부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강력한 단속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한국 드라마, 영화 등 영상물들을 몰래 보는 행위는 확산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한국 드라마가 ‘환상적’이어서 자연스럽게 북한 사회와 비교했으며 의사 표현과 외모 꾸미기가 자유로운 한국 모습을 보며 ‘사람답게 사는 것’을 고민했다고 증언하였다. 한국 드라마에서 의식주, 특히 집을 눈여겨보았으며 동상을 청소하고 초상화를 닦는 일과와 비교하자 철장 속에 갇힌 것처럼 느껴졌다는 증언도 있었다. 한국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사람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 드라마를 시청했지만 한국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발전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증언이 있었던 반면 자본주의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는 증언도 있었다. 많은 경우 한국 드라마로 ‘바깥세상’을 알게 되었다고 증언하였다.

## (2) 휴대전화 단속 및 처벌

북한 당국은 휴대전화에 도청 및 보안체크 기능을 삽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정보통제를 하고 있다. 북한 내 휴대전화 보급량은 증가하였으나 주로 국내 통화에 한정되고 있다. 방해전파 설비를 설치하고, 감청장비를 가지고 다니며 휴대전화를 단속하고 있다. 상시 이루어지는 단속은 주로 규찰대, 보위부, 109상무에서 한다. 직장에 검열이 나오면 휴대전화 사용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는 증언이 있었다. 휴대전화와 유선전화는 모두 보위부에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국가적으로 판매하는 업소가 있어 1인당 소지할 수 있는 휴대전화는 1대라고 한다. 중국 전화는 사용하면 바로 위치추적으로 걸리기 때문에 북한 전화를 사용한다는 증언이 다수 수집되었다. 한 북한이탈주민은 2018년에 중국 전화를 사용하다가 전화

를 감청하는 보위부 111에 걸려 영장 없이 가택수색을 당했으며 당시 유심칩을 이빨로 씹고 뇌물을 주어서 처벌을 면했다고 증언했하였다. 북한 주민들이 단속을 회피하는 방식도 다양해졌다. 평소에 숨겨놓았다가 산이나 아파트 꼭대기에 올라가 짧게 통화하거나, 중국산 스마트폰 위챗으로 채팅하거나, 문자메시지만 주고받은 후 바로 삭제한다는 증언이 수집되었다.

휴대전화 사용 단속 항목은 문자메시지 내용, 통화 내용, 메모리 등이다. 휴대전화 알림음을 한국 음악으로 넣거나 한국말로 문자를 보냈는지가 단속의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2020년에 자녀를 학교에 보낸 북한 이탈주민은 휴대전화를 소지한 학생들이 늘어남에 따라 학교에서 매일 아침 학생들의 전화에 불순녹화물, 한국 노래 등이 있는지 검사한다고 증언하였다. 2019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다수는 예전보다 단속이 더 심해지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주로 보안원이 단속하지만, 기차를 타면 보위부가 단속하며 때로는 기차 승무원도 휴대전화를 검열하여 북한 주민들은 수시로 단속받는 상황에 처한다. 보위부의 전화 파장 추적에 세 번 걸리면 교화를 가야 하며, 보지 말라는 영화가 들어있거나 이상한 사진, 하지 말라는 오락이 있으면 보안원들이 검열하고 구류장에 넣으며 교화도 갈 수 있고 노동단련대도 갈 수 있다고 한다. 단속에 하도 걸리니 핸드폰이고 뭐고 내 주머니 속에 있다고 내 것이 아니라는 증언도 있었다.

처벌의 수위는 단속 상황, 통화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보였다. 뇌물을 통해 형기를 낮추거나 처벌을 면했다는 증언이 다수 있었다. 휴대전화를 많이 사용하는 젊은 세대가 단속에 많이 걸리며 심하면 교화까지 가지만 뇌물로 무마되곤 한다. 대학생이 휴대전화에 있는 비사회주의적인 노래, 영상, 그림들을 보위부에 걸리면 학교에서 처벌받지만, 부자집 자식들은 돈을 많이 쓰고 나올 수 있다고 한다. 2019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규찰대 검열에 걸려 보안서에 간 적이 있었는데, 잘못했다고 사정하자 노



## 2.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 가. 식량권

식량권은 인간의 생명권과 직결되는 기본적 권리로서 권리행사의 주체는 개인이지만 식량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해야 할 의무의 주체는 국가이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사회권규약 당사국은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기아로부터 자유로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관할권 내의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필수적인 식량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sup>28)</sup>

<그림 III-4> 2022 세계기아지수: 북한<sup>29)</sup>

### GLOBAL HUNGER INDEX 2022: KOREA (DPR)

In the 2022 Global Hunger Index, Korea (DPR) ranks 97<sup>th</sup> out of the 121 countries with sufficient data to calculate 2022 GHI scores. With a score of 24.9, Korea (DPR) has a level of hunger that is *serious*.



28) UN CESCR, "General Comment No. 12: The Right to Adequate Food (Art. 11 of the Covenant)," para. 14.

29) Concern World Wild, *Global Hunger Index 2022*. (<https://www.globalhungerindex.org/pdf/en/2022/Korea-DPR.pdf>) (Accessed February 7, 2023).

그러나 국제기구에서 발표하는 북한의 식량 상황은 북한 주민들이 최소한의 필수적 식량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22 세계기아지수(Global Hunger Index 2022)에 따르면 북한의 기아 지수는 24.9점으로 심각(serious) 단계에 위치하고 있으며, 조사 대상국 121개국 중 97위를 기록하고 있어 북한의 식량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다.<sup>30)</sup>

또한 식량농업기구(FAO),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식량계획(WFP), 그리고 세계보건기구(WHO)가 공동으로 발간한 ‘2022 세계식량 안보 및 영양 현황(The State of Food Security and Nutrition in the World 2022)’에 따르면 2019~2021년 북한의 영양부족 인구는 총 1,07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1.6%를 차지했다. 이 수치는 지난 2004~2006년 810만 명에서 약 260만 명 가량 증가한 수치이고 비율로는 33.8%에서 8%p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sup>31)</sup>

김정은 시대에도 북한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식량난으로 인한 영양부족 상태를 겪는 원인은 부족한 식량 생산량을 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겠지만, 이와 더불어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식량 배급, 불안정한 배급을 메꾸기 위한 주민들의 자구책인 소토지 농사의 어려움, 식량증산정책의 실패, 식량 부족 상황에서도 이어지는 국가 차원의 무리한 공출 등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북한의 식량난은 악화되고 있다.

### (1) 북한의 불안정한 식량 수급 현황

2022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451만 톤으로 2021년 469만 톤보다 약 18만 톤 정도 감소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2016년 이후 전반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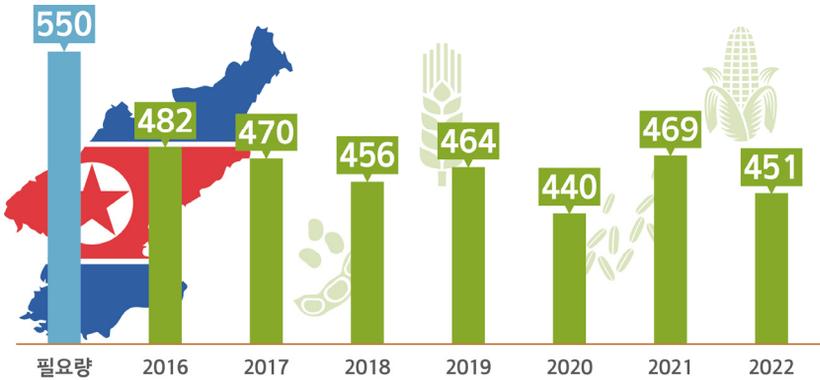
30) *Ibid.*

31)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FAO), *The State of Food Security and Nutrition in the World*, (<https://www.fao.org/3/cc0639en/online/cc0639en.html>) (Accessed February 7, 2023).

곡물 생산량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북한은 2019년 이후 매년 곡물 생산량이 들쭉날쭉 하면서 안정적으로 식량 확보를 하지 못하는 특징이 있다(〈그림 III-5〉 참조).

〈그림 III-5〉 북한의 곡물 생산량: 2016~2022년<sup>32)</sup>

(단위: 만 톤)



북한의 연간 곡물 수요량은 약 550만 톤으로 추정되는데 2016년 이후 쌀, 밀, 옥수수, 보리 등 모든 곡물을 포함한 평균 곡물 생산량은 약 460만 톤으로 매년 약 100만 톤가량의 식량이 부족한 것으로 추정된다. 식량 100만 톤은 북한 전 주민이 소비하는 2개월 이상의 양으로써 이는 북한 주민들이 매년 부족한 식량 공급으로 인해 적절한 식량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의 곡물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주요 원인으로는 불량한 기상조건과 대북제재로 인한 유류 및 장비부족,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국경폐쇄로 인한 대북 원조의 중단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북한 식량난의 근본적 원인은 자연재해와 외부환경으로 인한 식량

32) 농촌진흥청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재구성.

확보의 문제뿐만 아니라 불합리하고 부족한 북한의 배급제 상황, 비효율적 식량증산 정책, 무리한 공출 등 북한 국내 상황과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 (2) 차별적이고 불안정한 식량 배급

북한은 체제 형성기 직후부터 부족한 물자와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계획적으로 소비품이나 식량을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배급제를 운영해왔고, 이를 계획경제와 사회통제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최근 증언에 따르면 현재 북한의 배급제는 외형적으로만 형태를 유지하고 있을 뿐 차별적이고 불규칙적으로 배급이 이루어지는 등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국가에서 지급되는 식량 배급의 경우 충분하지도 않고 일시적인 경우가 많으며, 이마저도 당 간부와 보위부원 등 특정 계층을 중심으로 배급이 이루어지고 있어 일반주민들의 식량 부족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2016년에 탈북한 복수의 북한이탈주민은 배급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간헐적, 혹은 일시적으로 진행되는 사례가 많았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2019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당 간부가 배급을 가장 많이 받고, 그 다음으로 보위부원, 사법검찰, 보안원 순으로 배급을 받는다고 증언하였다.

국가 차원의 식량 배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일반 주민들은 자신이 소속된 공장이나 기업소로부터 배급을 받기도 하지만, 이 경우도 각 기업소가 얼마나 수익을 얼마나 내느냐에 따라 배급량의 차이가 있다. 기업소 중 식량 배급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나오는 기업소는 군수산업 기업소, 광산 기업소, 외화벌이 기업소 등이다. 군수산업의 경우 북한 경제시스템 및 체제 유지의 기본이 되는 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타 공장이나 기업소에 비해 배급이 안정적으로 지급되고 있고, 광산 기업소의 경우 식량난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이어지면서 배급의 양과 질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외화벌이 기업소의 경우 배급 형편이 그나마 양호한 것으로

보이는데,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어머니가 외국 수출품 공장 간부였는데, 매일 쌀 50kg을 배급받았고, 가족이 먹고살기 충분했다고 증언하였고, 2018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남편이 중국 합영 기업소에 다녔는데 식량 배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매일 기름(식용유) 1통(5kg)을 받았으며 봄과 가을에 한 번씩 화목(땃감) 3입방 정도를 받았다고 증언하였다.

군수, 광산, 외화벌이 등 특정 분야 기업소를 제외한 일반 기업소의 경우 식량 배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배급량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소 별로 식량 배급이 전혀 없었다는 다수의 증언이 수집되고 있다. 2017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본인은 물론 다른 기업소에서도 배급을 받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증언하였으며,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영예군인 공장에서 일할 때 감자배급이 나왔지만 배급의 질이 안 좋았고 썩이 난 감자를 쥐서 배탈이 나기 쉽기 때문에 배급을 타지 않았다고 한다.

북한은 군부가 체제유지에 중요한 기틀이기 때문에 군에 대한 식량 배급은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군대의 식량 사정은 일반 사회보다는 상대적으로 나은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군대에 식량 배급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군관들의 횡령과 같은 부패가 군대 내에 만연해 있어 일반 병사들까지 충분한 양의 식량이 배급되지 못하고 있다. 군대 내 식량 배급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자 군인들의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식량 도둑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다는 증언이 수집되고 있다. 2015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군대상황하면서 도둑질 안하면 생활이 되지 않아 부대원들에게 농작물을 훔치거나 민가에 가서 부식물을 훔치게 했다고 증언했으며, 2018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군대에 가면 도둑질을 시키는데, 민가에 가서 농작물을 훔치거나 부식물을 훔쳐오게 한다고 증언해 군인들의 민간인 대상 식량 도둑질이 상급자의 명령에 의해

강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2017년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수출이 어려워지면서 식량 사정이 악화되고 이로 인해 배급량이 줄거나 아예 중단되었다는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이 있었다. 2019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에 따르면 2017년부터 대북제재로 인해 중국에 철광석 수출이 중단되면서 탄광에서도 배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건버섯과 잣 등의 수출길이 막히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았다고 한다. 또한 대북제재로 인해 중국으로부터 밀수가 어려워지면서 쌀이나 물자가 부족하게 되어 주민들의 생활이 매우 어려워졌다는 증언도 수집되었다.

### (3) 소토지 농사의 어려움

국가 배급과 기업소 배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은 텃밭과 패기밭 등 다양한 형태의 소토지 농사를 통해 부족한 식량을 채우고 있다. 북한 주민들은 소토지 농사를 통해 주로 옥수수, 콩, 감자 등을 경작하고 고추, 오이, 배추 등 채소를 키워 부식물로 먹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북한 주민들은 소토지 농사를 개인 또는 가정의 식량 조달 방식으로 활용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수확물을 장마당에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는 등 경제활동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2016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텃밭을 활용해 강냉이 1톤 정도를 생산해 일부는 자체 소비하고 남은 것은 장마당에 팔아서 기름과 옷 등을 구입했다고 증언하였고, 2019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텃밭 400~500평에 배추, 양배추, 가지, 토마토, 고추, 무, 오이, 마늘 등을 심었다. 2015년까지는 남새(채소) 값이 좋아서 별이가 되었는데 이후부터는 값이 떨어져 푼돈도 벌기 어려워졌다. 가을에 김장철에는 몽칫돈을 벌 수 있었다고 증언해 소토지 농사가 단순히 부족한 식량을 메꾸는 수준을 넘어 사(私)경제 발달의 한 수단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다수의 북한 주민들이 텃밭과 뚝배기밭 등 소토지 농사를 짓고 있지만 주민들이 마음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 토지사용료를 내야한다는 다수의 증언이 수집되기도 했다. 그러나 사용료가 1평당 10원, 69원, 100원 등 일정하지 않은 점을 보았을 때, 국가에서 정해진 사용료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국토관리 차원에서 산림복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2015년을 ‘산림복구전투의 원년’으로 삼는 등 산림혁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일반 주민들의 소토지 농사를 금지하여 식량난이 가중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2015년부터 나무심기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일구던 밭을 회수하고 나무를 심는 바람에 식량사정이 더 악화되었다고 증언하였고, 또 다른 북한이탈주민은 최근 산림혁명(산에 밭을 못 짓게 하고 나무를 심는 사업) 이후 개인 농사가 어려워져 먹고 살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말해서 북한 당국의 산림복구 정책이 오히려 북한 주민의 식량 확보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III-6> 참조)

<그림 III-6> 산림복구정책으로 인한 뚝배기밭 감소(2014년/2020년)<sup>33)</sup>



33) 박주원, “산림 부문 기후변화대응 이슈 및 남북 산림협력방안,” 『남북협력을 통한 기후변화 공동대응방안세미나』 (2021), 재인용: 강호상, “국제협력을 통한 산림생태계 남북한 협력방안,” 『KEI 북한환경리뷰』 (2021), p. 31.

#### (4) 식량증산정책의 실패

북한 당국은 2014년 이후 협동농장 운영 방식의 변경을 통한 농지제도 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분조관리제를 보다 세분화한 ‘포전담당책임제’를 시행하고 있다. 포전담당책임제는 협동농장의 분조를 보다 세분화하고, 포전에서 수확된 농산물 분배를 초과 생산물에 한하여 국가와 농민이 일정 비율로 나누는 식량증산정책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포전담당책임제 실시 초기에는 정책의 취지가 잘 지켜져서 개인의 식량권 증진에 도움이 되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분배되는 포전의 크기가 공정하지 않고 포전 분배 후 비료 등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수확량이 좋지 않은 반면, 수확 목표량은 높아서 주민들이 농사를 지으려 하지 않는다는 증언이 수집되었다. 또한 수확물 배분 기준인 국가 70%, 노동자 30% 비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개인 가져가는 양이 적다는 증언과 관리자들의 부패로 인해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다수의 증언이 수집되어 포전담당책임제의 실효성이 높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9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포전담당제에서 원래는 국가에 수확량의 30%를 내고 농장원이 70%를 가져가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농장원이 1%도 가져갈까 말까한다고 말했다. 비료비, 기름비, 노력비 등을 떼고 나면 사실상 농장원이 가져가는 것이 없는데 분배라는 것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되었다고 포전담당책임제의 운영 실태에 대해 증언하였다. 또한 2014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논을 받을 때 좋은 땅을 받기 위해서는 뇌물을 바쳐야 한다고 증언했으며, 2019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좋은 땅은 인민반 반장이나 분조장이 가져가고 일반 농장원에게는 척박한 땅을 준다고 말했다.

#### (5) 무리한 공출

북한 주민들은 부족한 식량 공급 외에도 국가로부터 무리한 애국미, 군량미 명목의 공출(供出)로 인해 더욱 심각한 식량권 침해를 받고 있다.

우선 북한 주민들은 기본적으로 국가에 공출해야 하는 의무가 많고, 제때 공납을 하지 못하면 배급에서 제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공출에 응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2019년에 탈북한 북한이탈 주민은 직장뿐만 아니라 청년동맹, 직맹, 당원 조직, 인민반 등에 내야 하는 것들이 많아 한 달 배급을 다 공납해도 요구량을 대기 어려웠다고 증언했으며, 2012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국가에서 내라는 것이 많은데, 공납을 제대로 내지 못하면 가을 수확물 분배 때 제외되기도 하고, 또 분배 받은 식량에서 공납분을 제외하면 1/3도 남지 않는다고 증언하여 북한 당국의 무리한 공출이 주민들의 식량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 당국은 공출이 주민들의 자발적 행동이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할당된 공출을 내지 못하면 협박을 하거나 제재를 받기도 한다고 북한 이탈주민들은 증언하고 있다. 2017년에 탈북한 복수의 북한이탈주민은 애국미가 안 걸히면 가택수색을 한다고 협박 당하거나, 연말에 군량미를 내라는 지시가 내려오는데 공납을 하지 못하면 식량을 사서 내라고 하기도 한다고 증언하여 공출이 주민들의 자발적 행동과는 거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6) 자연재해와 코로나19의 영향

북한의 식량난은 앞에서 살펴본 배급제, 식량증산정책, 공출 등 여러 가지 북한 내부 문제들과 더불어 자연재해와 코로나19 등 외부 영향으로 인해 그 심각성이 가중되고 있다. 우선 북한은 매년 반복되는 가뭄, 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해서 농업 생산 기반이 크게 훼손되고 있으나 재해 복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농업 생산 여건이 좋지 않다(〈표 III-1〉 참조). 부족한 식량 증산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가뭄이나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한 관개 및 배수체계가 갖추어져야 하지만 북한에는 이러한 사회 기반 시설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어서 농산물 증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표 III-1〉 북한의 주요 자연재해 발생 현황: 2012~2021년<sup>34)</sup>

연도	자연재해 구분	피해 지역	피해 내용
2012	태풍(볼라벤)으로 인한 홍수, 산사태	평안남도, 황해남도, 황해북도, 강원도	인명피해: 53명 사망, 45명 실종 농지피해: 101,000ha
2013	홍수	자강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강원도, 황해북도, 함경남도	인명피해: 28명 사망, 18명 실종 농지피해: 13,340ha
2014	장기 가뭄(18개월)	황해남도, 황해북도	농지피해: 황해남도 논 면적 80%, 황해북도 논 면적 58%
2015	태풍(고니)로 인한 홍수	평안남도, 황해북도, 황해남도, 함경북도, 자강도	인명피해: 40여 명 사망 및 실종, 5,240여 주택 파손
2016	홍수	함경북도	인명피해: 138명 사망, 400명 실종 농지피해: 27,000ha
2017	가뭄	평안남도, 평안북도, 황해남도, 황해북도	농지피해: 50,000ha
2018	가뭄	강원도, 황해북도, 황해남도	농지피해: 9,900ha
2018	태풍(솔릭)으로 인한 홍수	황해남도, 황해북도, 강원도, 함경남도	인명피해: 이재민 1만 명 이상 발생
2019	태풍(링링)으로 인한 홍수	평안남도, 평안북도, 황해남도, 황해북도	인명피해: 5명 사망 농지피해: 46,200ha
2020	홍수	황해북도, 강원도	인명피해: 22명 사망, 4명 실종 농지피해: 22,000ha
2021	홍수	함경남도, 함경북도	인명피해: 수재민 1,300명 이상 발생 농지피해: 4,000ha

34) 최용호, “코로나19 사태와 북한 식량수급 동향과 전망,” 『KREI 농정포커스』 (나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을 토대로 저자 재구성.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는 북한의 식량 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만성적인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경봉쇄 조치를 취하고 외부세계와의 인적, 물적 교류를 전면 차단하였다. 국경봉쇄 조치로 인해 중국과의 무역도 중단되면서 외부로부터의 식량 도입이 감소하고 무역 활동이 어려워지자 해외 식량 구매를 위한 재정 기반도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2022년 5월 북한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자 강력한 봉쇄 및 격폐 조치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주민들의 이동 제한으로 인해 농업 생산 현장에 노동력 투입이 어려워져 농업 생산 활동이 크게 위축되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북한 당국이 전격적으로 대부분의 장마당을 폐쇄하면서 장사로 생활을 영위하는 주민들은 주 소득원을 잃게 되었고 식량 등 생필품을 구입할 곳을 잃어 생계에 큰 타격을 입었다. 장마당이 폐쇄되면서 북한 주민들은 당국의 통제를 피해 골목에서 장사를 하는 일명 ‘메뚜기장’을 형성하고 식량 등을 거래하는데, 메뚜기장은 단속 시에는 사라졌다가 다시 장이 서기를 반복하면서 물품이 일정하게 거래되지 못하다 보니 물품 거래가가 올라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봉쇄정책으로 식량 생산 활동이 위축되고 식량 거래도 대폭 축소되자 북한에서는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아사자 목격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이 감소추세에 있었으나, 최근 개성과 함경도 지역에서 다수의 아사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북한 주민들이 겪는 식량난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식량난 상황이 심각해진 상황에서 북한은 이른바 허풍방지법을 제정해 양곡 유통 비리 척결에 나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식량난의 악화는 식량 생산량을 속이거나 개인이 양곡을 빼돌리는 등 수매와 유통에서 비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에 북한 당국은 2022년 9월 25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곡물 수매와 양곡 유통 비리 척결 방안을 다룬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북한이 양곡 관리를 매우 엄격하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식량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유입을 우려한 북한 당국의 국경봉쇄 조치는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활동 또한 크게 위축시켜 외부로부터의 식량 지원도 크게 감소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의 연도별 식량 분배 현황(Annual Food Distribution)에 따르면 북한에 대한 WFP의 식량지원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2만 4,841톤이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인 2020년 1만 6,590톤, 2021년에는 6,079톤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sup>35)</sup>

이와 같이 자연재해와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외부 환경은 북한의 국내 문제와 연계되어 북한의 식량난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나. 건강권

인간의 삶을 기본적으로 영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기본적인 권리인 건강권은 식량권, 주거권, 교육권, 생명권, 비차별권 등 다른 기본권들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러한 권리들을 사회에서 영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건강한 삶을 향유하는 것은 개인의 취업 및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것뿐 아니라 세대를 넘어 사회경제적 지위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주민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북한 보건의료체계는 크게 무상치료제, 예방의학제, 의사담당구역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무상치료제는 북한이 자랑하는 사회주의 복지 시스템이며, 북한의 보건의료 환경을 고려해 예방의학을 강조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 이후 의료기관의 현대화, 의료봉사의 질 향상, 먼거리의 료봉사체계(원격진료체계) 구축 등을 강조하면서 주민들의 건강권 보호에 나서고 있지만, 실제 주민들의 보건의료 상황은 열악하며 건강한 삶을 영위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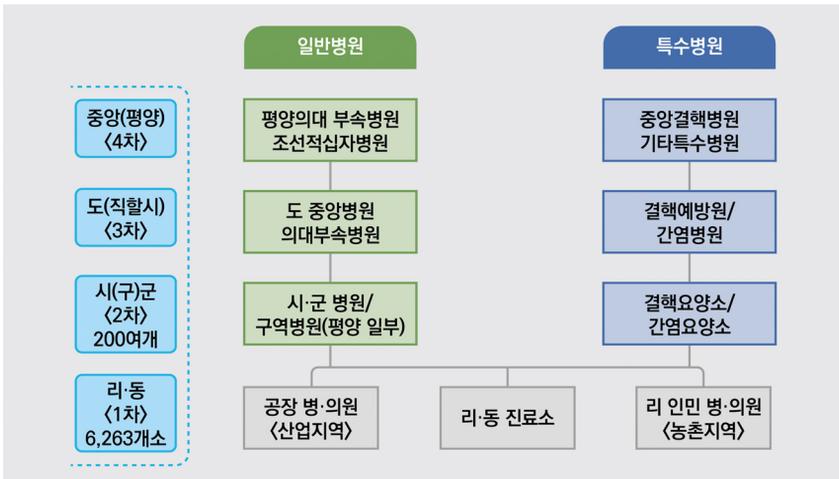
35) "WFP '코로나 이후 대북 식량 지원 75% 급감'," 『자유아시아방송』, 2022.9.2. (<[https://www.rfa.org/korean/in\\_focus/humanitarian-09022022152614.html](https://www.rfa.org/korean/in_focus/humanitarian-09022022152614.html)> (검색일: 2023.2.7.).

### (1) 의료시설 및 서비스의 접근성

북한 주민의 건강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의료시설 및 서비스를 얼마나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공공보건 및 기본 의료시설이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지, 보건의료서비스를 담당하는 의료진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 그리고 의약품의 공급 및 구매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 된다.

북한의 공공 의료서비스 체계는 리/동, 시/군, 도/직할시, 중앙의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질병이 있을 경우 거주지 인근의 진료소를 이용하고, 상황에 따라 상급 의료기관을 이용하게 된다. 2018년까지 평양에서 의사로 있었던 북한이탈주민은 북한 보건시스템상 종합진료소 단위에서 시작해 구역병원, 시급병원, 대학병원, 종합병원 형식으로 병원이 갖춰져 있다고 증언했다.

〈그림 III-7〉 북한의 보건의료시설 및 의료서비스 전달체계<sup>36)</sup>



36) Ministry of Public Health(2014); 황나미, “북한 보건의료 현황 및 최근 동향.” (2018.8.31.), 재인용: 이민주, “북한의 보건의료체계 현황,” 『Bio Economy Brief』, Issue 51, (성남: 한국바이오경제연구센터, 2018), p. 1.

의료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측면에서 보면, 북한 주민들의 의료 기관에 대한 접근성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1차 의료체계인 리·동 진료소의 경우 그 규모는 작은 편이지만 대부분 지역에 설치되어 있어 주민들이 쉽게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2차, 3차 병원의 경우 지역이나 형편에 따라 이용하기 어렵다. 농촌이나 산간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중앙의 상급병원을 이용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북한 당국은 출신성분 혹은 정치적 목적으로 주민들을 산간오지로 강제 이주시키는 정책을 여전히 활용하고 있다. 이들의 이동권이 제한되는 상황이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2018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리·동마다 진료소가 있었다고 증언했으며, 2018년 탈북한 또 다른 북한이탈주민 역시 리마다 진료소가 있어 진료소에서 진찰을 받았다고 하면서 만약 상태가 안 좋으면 후송증을 떼서 큰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얘기했다. 그러나 진료소의 수준은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탈주민은 동마다 진료소가 있었지만 실력이 안 좋고 의료 수준이 낮았다고 증언했다.

〈그림 III-8〉 북한의 상급병원<sup>37)</sup>



37) 『노동신문』, 2021.11.6. (사진=뉴스1)

북한 주민들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물질적 대가를 ‘뇌물’이라고 인식하기보다 감사 표시, 인사치레, 예절의 문제라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가를 의사에게 제공하지 않을 경우 의료서비스를 잘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가가 일정 수준 강제적 성격을 띠고 있다. 김정은 시대 확대된 시장화로 인해 사적 의료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예를 들어 수술이나 입원할 경우 의료진에 수고비 명목으로 현금이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증언도 적지 않다.

2018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2018년 4월 딸의 맹장수술을 위해 200위안을 지불하고 병원에 입원시켰으며, 병원에서 쓰는 거즈나 의약품 등을 직접 사서 바쳐야 했고, 난방을 위한 떨감도 스스로 마련하여야 했다고 말했다.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2019년 7~8월경 귀와 머리가 아파서 이비인후과를 두 번 방문했는데, 처음에는 치료비를 안 냈지만, 두 번째 진료 시 인사치레로 북한돈 3,000원을 냈으며, 의사가 먼저 인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증언하였다. 2018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병원이 무상이지만 신속한 치료를 원할 경우 의사에게 담배나 5~10위안을 주면 치료를 빨리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도 아이들에게 자주 발병하는 충수염 수술은 50위안, 장천공 등 큰 수술은 100~200위안을 집도의에게 내야 했다고 말했다.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이 불충분하고, 의료인력이 제대로 임금이나 배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처럼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현상은 불가피하다고도 볼 수 있다. 이렇듯 의료서비스의 비용을 개인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통해 환자가 돈이 없을 경우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병이 깊어지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8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같은 인민반에 속해 있던 40대 여성이 자궁암에 걸렸으나 돈(300위안)이

없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였다고 증언하였다. 2018년 탈북한 또 다른 북한이탈주민도 이웃에 유방암에 걸린 환자가 있었지만 생계가 어려워 병원에도 가지 못하고 약도 쓰지 못해 앓다가 사망했다고 증언하였다.

또 다른 문제는 정치적·사회적 지위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 주민들의 이용도가 높은 1, 2차 의료체계는 상대적으로 많이 붕괴되었으나 간부들이 이용하는 진료과는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운영되고 있다. 2018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간부 전용 진료시설이 따로 있으며 여기에 근무하는 의사나 간호사는 능력, 인물, 체격을 보고 뽑는다고 증언하였다. 2018년 탈북한 또 다른 북한이탈주민도 도 병원이나 시 병원에 간부들을 위한 특수입원실이 있었다고 말했다.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도 병원, 시 병원 등 큰 병원에는 ‘진료과’라는 것이 있으며, 진료 1과, 진료 2과 등으로 불리는데 간부들이 치료받는 곳이었다고 증언했다. 2019년 탈북한 또 다른 북한이탈주민은 진료과에 오는 당 간부들이 직접 북한산 질 좋은 의약품을 직접 가지고 와서 치료를 받는다고 말했다.

## (2) 공공 의료의 질 저하와 사적 의료행위의 일상화

북한 주민들은 무상치료라는 대전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 의료시설에서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공공 의료기관에서 의료진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도 낮다.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진은 충분한 실력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의료시설도 대부분 낙후되어 있거나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김정은 집권 이후 지속된 경제난은 북한의 공공부문 의료체계의 붕괴에 영향을 미쳤고,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주민들은 공공보다는 사적 의료서비스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수술 등과 같이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 병원에 가기보다 개인 의사나 약국을 찾는 경우가 많다. 개인 의사들이 동네에서 쉽게 찾을 수 있고 비용도 비싸지 않기 때문이다. 아프거나 치료가 필요하거나 약을 구매할 때에도 개인 의사나 퇴직

한 의사를 찾아가서 진료를 받는 경우가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수술을 받는 경우가 아니면 북한 주민들이 병원에 가지 않으며, 개인 의사들을 찾아서 주사 처방을 받기도 한다고 증언했고,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도 일반적으로 아플 경우 개인 의사를 찾아가 치료를 받았고, 검진도 개인 의사에게 받고 약도 그에게 구입했다고 말했다.

북한 주민들이 개인 의사를 선호하는 이유로 공공 의료기관의 기술이 떨어진다거나 장비의 낙후성에 대해 불신하고 있으며 개인 의사들이 병원 의사보다 실력이 좋다고 보기 때문이다.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아버지가 개인 의원을 운영했는데 의술이 좋아 병원에서도 고치지 못하는 병을 고치곤 했으며, 동네 사람들이 병원을 가지 않고 아버지를 찾아왔다고 증언하였다.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2015년경 하혈을 해서 산원에 갔었는데 얼마 전에 위생(생리)을 했는데 임신이 아니냐면서 페니실린을 1주일 동안 맞으라고 했고, 그 이후 병원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병원을 잘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2019년 탈북한 간호사 출신 북한이탈주민에 따르면, 많은 임상경험을 갖춘 의사들이 병원에 직함만을 두고 집에서 진료를 보고 있으며 입소문으로 주민들이 비용을 지불하며 이들에게 진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주민들은 북한의 의료인력에 대해서 크게 신뢰하지 않고 있다. 김정은 시대 들어 북한 당국의 의료인력 양성 및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보인다.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국가에서 주는 것이 없으니 병원 의사들의 실력이 한심하다면서, 개인 의사들이 더 실력이 좋아서 많이 간다고 증언했고, 또한 간호사의 경우도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은 실력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9년 탈북한 또 다른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서는 의사들 실력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고 증언하면서 의과대학을 다녀도 김매기 등에 동원

되는 일이 많아 배움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며, 돈을 내고 졸업증을 사는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실제 간호사로 근무하다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간호사 학교는 보통 2년제지만 간호사 수가 부족하므로 6개월 단기 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증언자 역시 그러한 과정을 거쳐 간호사가 되었다고 말했다.

### (3) 보건의료 부문의 ‘자력갱생’과 마약류의 오남용

북한 당국의 공식적인 의료체계가 잘 갖춰져 있지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적 의료서비스에 상당히 의존하는 등 스스로 구제하려는 소위 ‘자력갱생’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무상치료의 원칙 하에서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무상으로 지급해야 하나, 경제난 이후 의약품 공급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어 개인집 및 개인약국을 통해 주민들이 직접 의약품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사적 구매가 일상화되고 있다. 주민들은 아프더라도 병원 대신 개인의사를 찾아가 진료를 받고 의사가 소개해주는 약방에 가서 약을 사서 복용하거나, 스스로 판단해서 장마당이나 개인약국에서 약을 사서 복용하는 등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향은 북한 내 시장화가 확산되며 소득의 계층 분화가 이루어지는 현상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경향은 김정은 시대를 들어 북한 내 시장화가 확산되면서 소득의 계층 분화가 이루어지는 현상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진료소에 다닐 형편이 안 돼서 돌팔이 의사들이 진단해주면 그 진단으로 약국에 가서 약을 사거나, 개인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약을 사서 본인이 치료하기도 한다고 증언했다. 같은 해 탈북한 또 다른 북한이탈주민은 아프면 주로 병원에 가지만, 병원에서는 진단만 받고 약국에 가서 약을 사서 스스로 치료한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사적 의료서비스, 예를 들어 무자격자가 시술하거나 의약품을 판

매하는 등 불법적 의료행위는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헤산시에 거주하다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50대 여성은 딸이 집에서 진료를 보았는데, 의학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으며, 개인에게 70만 원 가량을 주고 배운 게 전부였다고 증언하였다. 2015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개인약국 운영자는 전문지식이 있기보다는 돈 있는 사람이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 헤산시 제2인민병원에서 약 처방을 받아 보안원 부인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실수로 다른 약을 줘서 사망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최근 북한 당국이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나 약 판매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실제 실효 있는 조치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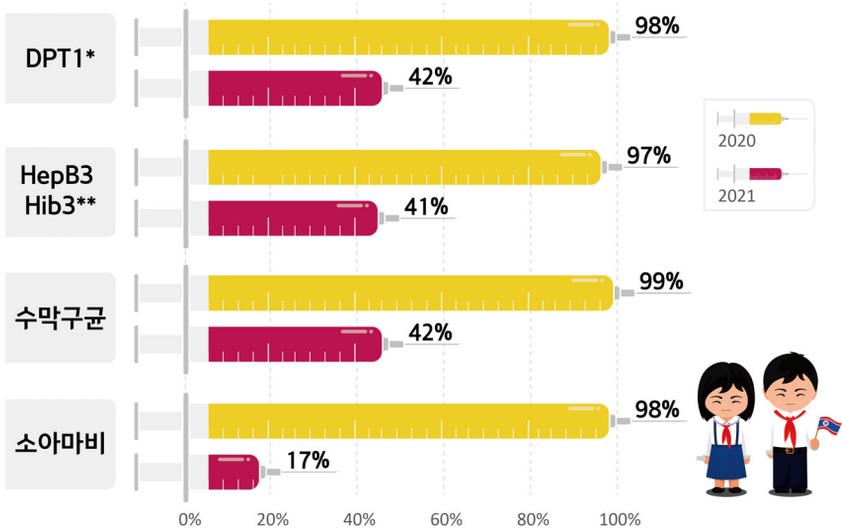
또 다른 심각한 상황은 북한 주민들이 잘못된 의료지식으로 병두, 아편 등 마약류를 오남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탈북한 여러 북한이탈주민은 병두 등 마약 사용이 북한 사회에 상당히 만연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아버지가 신장염을 앓았는데 너무 아플 때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아편을 약으로 사용했다고 하면서, 병두는 진통제뿐 아니라 비만, 피부 관리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2018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남편이 기관지확장증을 앓았고 아편을 약처럼 사용했다고 말했으며,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역시 남편이 2018년 뇌혈전 증세가 있어 병두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증언하였다.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마약에 중독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약으로 특히 병두를 항생제, 아편을 진통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9년 탈북한 또 다른 북한이탈주민은 많은 가정에서 약품 대용으로 소량의 양귀비를 재배하고 있으며, 특히 50대 이후에는 뇌질환 예방 차원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편을 맞는 것이 좋다는 인식도 많다고 증언했다. 또한 자신이 거주했던 지역의 경우 병두를 한 번이라도 경험해본 사람은 70~80% 정도로 상당히 일반적이라고도 말했다.

#### (4) 코로나19가 북한 건강권에 미친 영향

코로나19가 북한의 정치, 사회,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쳤지만, 특히 북한 주민들의 건강권 측면에서 끼친 영향 역시 지대했다. 북한의 보건의로 체계 중 중요한 한 축은 예방의학제도이다. 즉 당국이 발병하기 전 질병을 예방함으로써 생명을 보호하는 것으로 치료보다는 병의 예방을 우선해 방역과 위생교육 등 다양한 보건사업을 전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난 심화로 인한 의료체계 붕괴,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라는 돌발상황이 발생하며 예방의학의 취지는 북한 사회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관심을 두어야 할 문제로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예방접종이 크게 감소했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로 인해 아동기에 필수적인 예방접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 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질병에 노출되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림 III-9〉 코로나19 이후 북한의 아동 예방접종률 변화



\*DPT1: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HepB3: B형간염, Hib3: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코로나19 이전의 경우 예방접종은 비교적 잘 진행되었다.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2018~2019년에 거주지 진료소에서 자녀가 소아마비, 결핵, 간염, 홍역, 장티푸스 등에 대한 예방접종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WHO의 발표에 따르면, 북한의 아동에 대한 예방접종률이 2019년 기준으로 96~98%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했다.<sup>38)</sup>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국경봉쇄가 지속되면서 백신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아동의 예방접종률은 크게 줄어들었다. 국경봉쇄의 상황에서도 남한과 국제사회는 보건의료물품 지원에 나섰으나, 북한 당국은 모든 외부의 지원을 거부하면서 의료환경은 더욱 열악해질 수밖에 없었다. 2022년 WHO와 UNICEF의 발표에 따르면, 2021년 북한의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예방을 위한 DPT1 백신접종률은 2020년 98%에서 42%로 급감했고, B형 간염 접종률(HepB3)과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Hib3) 접종률도 97%에서 41%, 수막구균(DTP3) 접종률도 99%에서 42%로 급격하게 감소했다. 2020년 98%였던 소아마비(IPV1) 백신 접종률은 17%까지 크게 하락했다. 그나마 소아결핵(BCG) 예방접종만 99%에서 95%로 소폭으로 낮아졌다.<sup>39)</sup>

38) WHO, "WHO Vaccine-preventable Diseases: Monitoring System. 2020 Global Summary," 2020, <[http://apps.who.int/immunization\\_monitoring/globalsummary](http://apps.who.int/immunization_monitoring/globalsummary)> (Accessed January 15, 2020).

39) WHO,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HO and UNICEF estimates of immunization coverage: 2021 revision," <[https://cdn.who.int/media/docs/default-source/country-profiles/immunization/2022-country-profiles/immunization\\_prk\\_2022.pdf?sfvrsn=fb196045\\_3&download=true](https://cdn.who.int/media/docs/default-source/country-profiles/immunization/2022-country-profiles/immunization_prk_2022.pdf?sfvrsn=fb196045_3&download=true)> (Accessed September 4, 2022).

〈그림 III-10〉 북한의 건강권 실태



다. 노동권

(1)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세계인권선언 제23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자유로운 직업선택의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개인의 희망에 따라 자유롭게 직업과 직장을 선택할 수 없고 국가가 개인을 직장에 일방적으로 배정하는 형태로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직장배치 시 본인의 의사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고 토대(성분), 인맥, 뇌물공여 여부에 따라 직장배치가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9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검찰서, 보안서, 인민위원회, 당·군 등은 토대가 중요하고 나머지 직종은 경제력이 중요하다고 증언해, 권력기관의 취업은 개인의 배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일반 직장의 경우는 뇌물공여 여부에 따라서 개인이 선호하는 직장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

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2019년 탈북한 또 다른 북한이탈주민에 따르면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서 보안원 2,000달러, 검찰서 5,000달러, 식당이나 무역회사 300달러 등의 뇌물을 제공하면 보안원, 검찰서, 보위부 등 권력기관 또는 원하는 직장에 취업이 가능하고, 뇌물 가격은 직위에 따라 정해져 있다고 증언해 뇌물 공여가 직업 선택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에서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가장 대표적 사례는 ‘무리(집단)배치’이다. 무리배치란 공장, 탄광, 건설 공사장 등 노동력이 부족한 곳에 개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국가의 지시에 의해 강제적, 일방적으로 노동력이 집단 배치된 것을 의미한다. 집단배치의 주요 대상은 학교 졸업생, 제대군인들인데 이들이 주로 배치되는 곳은 탄광, 군수공장, 농장, 건설대 등 주로 기피 시설이고, 한 번 무리배치가 되면 타 직장으로 배치 요청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토대가 좋거나 뇌물을 제공할 수 있다면 무리배치 역시 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북한 당국은 개인의 능력과 희망에 따른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고 일방적인 직장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배치된 직장에서 이직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은 환경이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서도 개인이 원하는 직장에 배치되기 위해서는 토대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뇌물을 주고 좋은 직장으로 배치되거나 이직하는 사례가 증가 추세에 있어 직업 선택에 있어 또 다른 불평등 현상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2) 열악한 근로조건

북한의 노동자들은 근로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노동자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2018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작업장에 입고 간 옷이 곧 작업복이고 안전모는 생각도 할 수 없었으며, 모든 안전 관련

장비는 사비로 구입해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2019년에 탈북한 북한 이탈주민은 화약을 다루는 직장에서 근무를 했으나 마스크와 장갑 이외의 별도의 작업복은 지급받지 못했으며 유해환경으로 인해 2~3년 일한 뒤에는 병을 얻는 경우가 많았다고 증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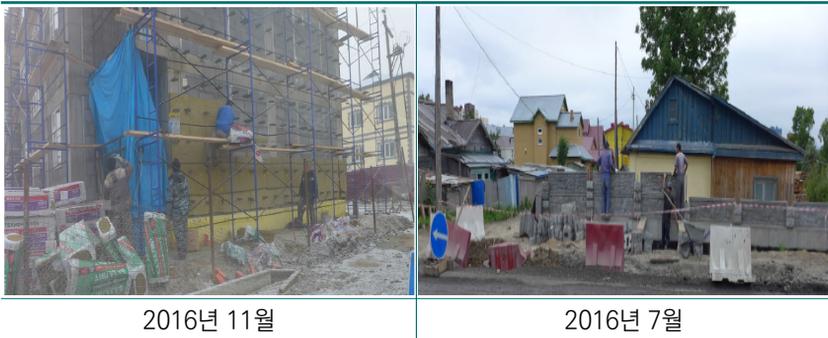
북한은 법으로 하루 8시간의 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법으로 규정된 근로시간의 의미가 없는 직장이 많다. 왜냐하면 전기와 원자재 부족, 공장 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해 공장 가동률이 크게 낮아져 근로시간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직장에서는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증언도 수집되었는데, 군수품 공장에 다니다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하루 15~16시간 노동을 해야 했다고 증언했으며, 광산에 근무했던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정해진 근무시간은 따로 없었고 아침 5시에 기상하여 빠르면 저녁 7시, 늦으면 밤 10시까지 일했다고 증언했다.

북한이 가입하고 있는 사회권규약 제8조 제1항에서는 규약 당사국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하며,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에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대변하는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아 노동자들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기본적인 노동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은 자신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모임이나 활동을 생각할 수도 없고 국가에서 승인한 단체 외에는 노동자들의 조합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증언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을 결성할 경우 북한 당국으로부터 처벌을 받기 때문에 조합 결성을 시도조차 하지 않고 따라서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단체로 항의하는 것을 한 번도 목격하지 못했다는 증언도 수집되었다. 이처럼 북한에서는 노동조합의 결성·가입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아 노동자들은 직장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더라도 노동환경 개선이나 처우개선을 요구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 (3) 해외파견 노동자에 대한 노동권 침해

북한의 노동권을 살펴보기 위해서 반드시 짚어야 하는 부분은 해외 파견 노동자와 관련된 내용이다. 그동안 북한은 중국, 러시아 등 40여 개 국가에 노동자들을 파견해 왔다. 북한 당국이 해외로 노동자들을 대거 파견한 이유는 외화벌이를 위해서인데 이들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되는 외화는 연간 수억 달러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대북 제재의 일환으로 2017년 유엔 안보리 결의 제2735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의 북한 노동자 신규 허가를 제한했고, 결의 제2397호를 통해서도 유엔 회원국 내에 체류 중인 북한 노동자를 24개월 내 송환할 것을 결정했다. 일련의 대북제재로 인해 현재 해외 노동자 수는 크게 감소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북한이 국경을 폐쇄하면서 여전히 해외에 남아 있는 노동자 또한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III-11〉 북한의 해외파견 노동자<sup>40)</sup>



북한에서는 원칙적으로 국가 차원의 인력 수급 계획에 따라 노동력의 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외파견 노동자의 경우도 주민들의 자발적 직업 선택 권리가 제한되고 있다. 많은 북한 주민들이 큰돈을 벌 수 있는

40) 이애리아 외,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북한 노동자』 (서울: 통일연구원, 2016), p. 126, p. 131.

기회이기 때문에 해외파견을 희망하지만 실제로 파견의 기회는 토대가 좋거나 특히金正은 시대에 들어서서는 뇌물을 바칠 수 있는 경제력이 있는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대부분의 해외파견 노동자는 당원이거나 이전 근무지가 평양 혹은 대도시인 경우가 많았고, 파견자 선발 시 보통 8촌까지의 가족 내력을 확인하고 기혼자의 경우 처가의 내력도 살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볼 때 해외파견의 기회는 신분이 좋고 경제적 측면에서 중산층 이상이 되는 주민들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 주민들이 그토록 원하는 해외파견이 된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노동자들은 장시간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어 적절한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보통 해외 건설 현장에 파견되는 북한 노동자들은 현지 국가의 노동 규정을 어기고 무리한 노동에 시달리는데, 러시아에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근무했던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노동시간은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였으며 주말에도 쉬지 못했다고 한다. 또 쿠웨이트에서 2017년까지 근무한 북한이탈주민은 아침에 일을 나갔다가 저녁 늦게 들어오면 술 마시고 그냥 잠드는 '노예 같은' 생활을 했다고 한다.

또한 열악한 근로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북한 해외 노동자들은 힘든 노동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 북한 노동자들은 대체로 현지 기업으로부터 임금을 받지 않고 자신이 소속된 북한 현지 회사로부터 임금을 포함한 전체 금액을 지급받는데, 북한 회사가 현지 회사로부터 전체 금액을 지급 받으면 국가가 1/10, 수도건설위원회 3/10, 현지 회사 5/10, 노동자가 1/10을 가져가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임금은 얼마 되지 않으며 이마저도 충성자금, 당자금, 국가계획자금 등의 명분으로 당국에 납부해야 해서 과도한 노동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증언이 수집되었다. 그리고 해외파견 북한 노동자들은 현지 체류 기간 내내 신분증을 압수당한 채, 북한 당국의 감시와 통제 속에서 단체생활을 하고 있어 심각한 사생활 침해를 받고 있다.

## 라. 교육권

북한은 헌법 제73조에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교육제도와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교육법, 보통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에서 전반적 무료 의무교육제를 규정하고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전반적으로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령들을 정비하고 정책을 수립했다. 2019년 UPR 보고서에서 북한은 교육을 가장 중요한 국가 아젠다로 여겨 GDP의 8.6%까지 교육 부문에 투자를 증대했다고 밝히고 있고, 2017~2018년에는 멀티미디어 기기를 교실에 도입한 다기능교실, 각종 실험실과 편의시설을 갖춘 ‘본보기학교’를 세워 교육의 질을 높이려 하고 있다.

〈그림 III-12〉 북한의 본보기학교<sup>41)</sup>



이와 함께 2022년 조선노동당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중앙과 지방, 도시와 농촌의 교육수준 차이를 줄이는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김정은 위원장은 지방과 농촌의 교육 조건과 환경을 현대적으로 개선시키고 학교를 현대화하는 과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41) 『노동신문』, 2020.7.29. (사진=뉴스1)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43)</sup> 실제로 복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은 학교 내 위생시설이 열악한데 재래식 화장실이 외부에 있는 경우가 많고 손 씻는 시설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증언하고 있다. 결국 김정은 체제 하에서 북한 당국이 교육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북한 전역에 걸친 교육 환경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교육 환경에 대한 지역 간, 학교 간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북한의 학생들은 여전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학습을 하고 있다.

## (2) 열악한 교원에 대한 처우

북한에서 교원에 대한 처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교원의 생계가 불안정하고 이는 교육환경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선 교원의 월급이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적거나 월급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북한의 교원들은 생계 불안으로 인해 소토지를 경작하거나 방과 후 개인교습과 같은 부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2015년에 탈북한 북한 이탈주민은 교사들이 월급을 받지 않다 보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소토지를 경작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농사에 학생들을 동원하기도 했다고 밝혔고, 2016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교사들의 경제적 부분들을 학부모들이 거의 부담하는데, 특히 반장이나 기타 열성 학부모들의 경우 교사에게 방과 후 과외를 맡기는 식으로 경제적 도움을 준다고 증언하였다.

북한의 학부모들은 교원의 생계 불안이 자녀들의 학교생활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여 교원들의 생계는 학부모들이 책임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크며, 교원 역시 생계 불안 때문에 촌지를 받는 경우가 많다. 2017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남편이 교사였는데 보수는 따로 없었고 1년에 감자배급이 몇 번 나왔을 뿐이다. 그래서 반장 등 열성자 부모들이 교사 가족을 먹여 살렸다고 증언하였고, 또 다른 북한이탈주민은 교원

43) UNICEF, *Analysis of the Situation of Women and Childre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yongyang: UNICEF, 2019), p. 81.

이 다른 직업에 비해 생활수준이 낮고 사는게 힘들어서 분단위원장은 500위안을 내고 학급반장은 250위안, 사상부위원장은 100위안을 냈고, 돈을 바치느니 가정교사를 붙이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가정교사를 두었다고 밝혔다. 이처럼 교원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다보니 북한에서는 교원 희망자가 없다는 증언도 있었다. 김정은 집권 이후 적극적인 교육 정책이 주로 시설 개선 사업에 치중되다 보니 교원에 대한 처우는 여전히 열악하고 이 문제는 질 높은 교육이 제공되지 못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3) 제도와 현실의 괴리

북한 교육법 제12조에서는 북한 주민들이 유치원 1년, 소학교 5년, 초급중학교 3년, 고급중학교 3년 과정이 포함된 “중등일반교육을 받을 의무와 무료로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북한 당국은 교과서, 교육자료, 교육장비, 교통수단 등을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sup>44)</sup>

〈표 III-2〉 북한의 무상의무교육 학제<sup>45)</sup>

연령	교육기관		단계
15~17세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고급중학교(3년)	중등교육
12~14세		초급중학교(3년)	
7~11세		소학교(5년)	초등교육
6세	유치원(2년)	높은반(1년)	취학전 교육
5세		낮은반(1년)	

44) UN Doc. A/HRC/42/10 (2019), para. 78.

45)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2022 북한 이해』 (서울: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2022), p. 246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실제로는 무상의무교육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우선 수업료는 별도로 내지는 않지만, 각종 명목으로 학교에 내야 하는 비용이 많아서 학부모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름철에는 교실 시설 개선비용, 겨울철에는 학교에서 사용할 뿔감 마련 비용을 내야하고 수시로 고철과 파지 등을 내야 해서 학부모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다수의 북한이탈주민에 따르면 학교에서 지시하는 물품이나 비용을 내지 못할 경우 교사로부터 질책을 받게 되며 이러한 부담은 학생들의 결석 요인이 되기도 한다. 2017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에 따르면 학교는 학생들이 모아온 파철이나 파지를 팔아 운영이 되는데, 파지나 파철을 내지 못할 경우 대신 돈을 내야하고 돈을 내지 못할 경우 비판을 받는다고 한다. 따라서 가정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학교를 다니지 못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2019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가에서 학교에 물자 공급이 전혀 나오지 않아 물자 구입이나 학교 시설 개선비용을 학부모가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의 불만이 매우 크고 차라리 유상교육을 해서 교육시설이 더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했다. 결국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경우 경제적 부담 때문에 교육 접근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북한은 2020년 원격교육법을 신설해 도시와 농촌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로 원격교육은 대학교육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데다 원격 교육을 위한 교육 기자재 구비의 차이가 지역 간, 학교 간에 존재해서 도서 지역이나 산간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의 교육 접근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마. 사회보장권

세계인권선언 제22조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회권규약 제9조에

서도 국가는 모든 사람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렇듯 사회보장권은 국가로 하여금 사람들의 사회적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human dignity)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sup>46)</sup> 특히 사회보장권은 빈곤을 감소 및 완화하고, 사회적 배제를 방지하며, 사회적 통합을 증진하는 데에 기여한다.<sup>47)</sup>

북한은 주민들의 사회보장권과 관련해 다양한 법규를 마련하고 있다.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을<sup>48)</sup> 기본법으로 하여 인민보건법, 연로자보호법, 사회보험법, 노동보호법, 여성권리보장법, 장애인보호법 등 범주와 대상에 따라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 사회보장권을 보장하려는 북한 당국의 의지가 부족할 뿐 아니라 사회보장을 위한 국가재정도 열악하다. 실제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주민들에 대한 사회보장 제도가 현실에서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주민들의 사회보장권을 국제규범의 기준에서 살펴본다면, 그 실태와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25조 1항에서 모든 사람이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지니며, 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 사망, 노령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상황으로 인한 생계 결핍의 경우에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노인복지와 긴급복지 차원에서 북한 주민들의 사회보장권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고령사회로의 진전과 그에 미치지 못하는 노인복지

김정은 시대의 북한은 저출산 고령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미국 CIA가 집계해 매년 발표하고 있는 ‘월드팩트북(The World Factbook)’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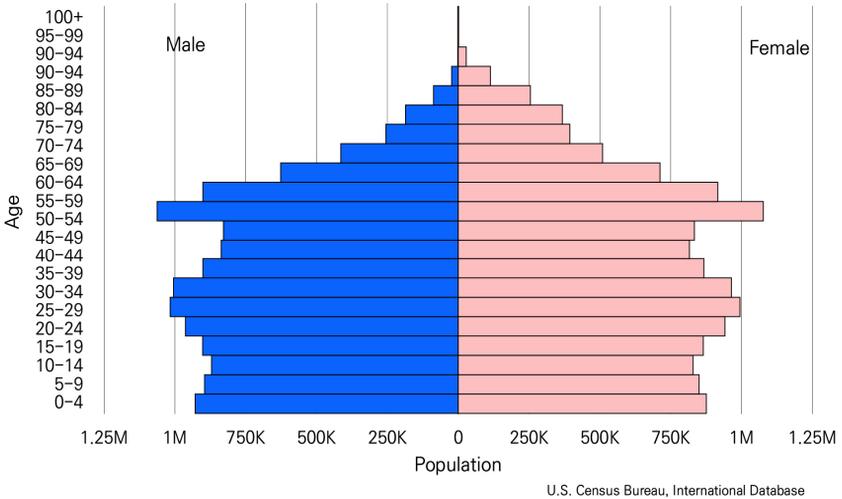
46) UN CESCR, General Comment, No. 19 (2007), para. 1.

47) UN CESCR, General Comment, No. 19 (2007), para. 3.

48) 북한은 2021년 3월 3일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을 제정하였다.

따르면, 2022년 북한 전체인구는 약 2,599만 여 명이며, 이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75%를 차지하고 있다.<sup>49)</sup> 보통 고령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라 하고, 14% 이상이면 고령사회라고 한다. 북한은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으며, 점차 고령사회로 진행되고 있다. 다시 말해 북한은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빠르게 진행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III-14〉 북한 2022년 인구 피라미드(추정)<sup>50)</sup>



고령화사회로 진입한다는 것은 국가가 고령인구에 대한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김정은 시대 고령인구에 대한 사회보장은 제도적 장치들에 비해 실제 상당히 열악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자 60세, 여자 50세 이상에게 매월 지급되는 연로 연금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전에는 연로연금이

49) CIA, *The World Factbook 2022*, ([https://www.cia.gov/the-world-factbook/static/10f2d2238e7dfdbc7b69288f48026e38/KN\\_popgraph2022.jpeg](https://www.cia.gov/the-world-factbook/static/10f2d2238e7dfdbc7b69288f48026e38/KN_popgraph2022.jpeg)) (Accessed February 8, 2023).

50) *Ibid.*

많지는 않았지만 일정 수준의 생활을 할 수 있었지만, 이후 법 규정과 달리 지급되지 않기도 했다는 증언이 있었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 노령연금이 지급되고는 있지만, 고령자의 생활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수준이다.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증언자의 할머니가 연로보장 대상으로 한 달에 북한돈 350원을 받았는데, 그 금액이면 사탕 두 알 정도 살 수 있었다고 말했다. 2019년 탈북한 또 다른 북한이탈주민도 아버지가 매달 북한돈 700원을 받았는데, 그 금액으로는 밥 한 끼 사 먹기도 어려운 수준이라고 증언했다. 2020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주민센터에서 1년에 북한돈 500~600원을 받게 되는데, 이는 쌀 1kg도 살 수 없는 금액이라 자식들이 돌봐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듯 생활유지가 불가능한 수준의 연로연금(그마저도 공로 수준에 따른 차별 존재)이 지급됨으로써 이들에 대한 부양 의무가 개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사회적 격차가 심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연로연금이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다 보니, 고령층은 자녀에게 의존하거나 스스로 일을 해서 소득을 확보해야 하며, 사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양로원에 입소하고 있다. 2018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시어머나가 연금으로는 생활할 수 없어 장마당에서 약장사를 했으며, 식량은 아들이 보내주었다고 한다. 2017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연로연금이 형식적인 수준에서 지급되고 있다면서, 자식이 간부 등으로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고령층은 폐기밭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죽는 순간까지 움직여야 하며, 그렇게도 할 수 없는 사람은 양로원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 (2) 긴급 위기대응 및 지원 체계 부재

사회보장권의 또 다른 핵심축은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하는 긴급복지시스템의 작동 여부에 있다. 주요 소득자의 질병, 사망 등 갑작스런 위기

로 생계가 곤란해진 가정이 신속하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의 긴급복지 및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김정은 집권 이후 대북 제재가 더욱 강화됨에 따라 국가재정 능력이 크게 줄어들면서 긴급지원 체계가 붕괴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7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질병에 걸리거나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도움을 받을 곳이 없었다고 증언했다.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역시 가정경제에 위기가 와도 국가로부터의 도움은 없다고 말하였다. 일부 국가로부터의 지원이 있었다는 증언도 있었으나, 그 경우라 하더라도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그 규모 역시 충분하지 않다.

건강상의 원인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현금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며, 장기간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는 장애 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질 필요가 있다.<sup>51)</sup> 그러나 북한에서는 질병·장애로 인해 장기간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주민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동생이 어릴 때 다리를 다쳐 조금 절룩거리는 장애가 있었는데, 국가로부터의 지원은 없었다고 하면서, 오히려 장애인들이 일하는 경로동 직장에 모아서 일하도록 했다고 증언했다. 2019년 탈북한 또 다른 북한이탈주민은 증언자의 아버지가 소아마비로 어렸을 때부터 다리를 절었는데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 사회보장 등록을 하였다. 그러나 근무하는 동안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보수를 더 주거나 하는 것은 전혀 없었다고 한다.

김정은 시대 북한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출산장려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것도 사회정책 변화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이다. 북한

51) UN CESCR, General Comment, No. 19 (2007), para. 14.

당국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보육시설 확충에 나서고 있으나, 실제 재정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그 효과를 보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아이 5명부터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는 게 있었고, 최근에는 3명부터 약간의 보조금이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그녀는 국가 보조금 이외에 학습장이나 학용품 같은 것도 부정기적으로 받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집권 이후 고아들을 위한 시설을 많이 설치하였는데, 이를 통해 아동 및 고아에 대한 국가의 사회적 책임을 일부 강화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세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 3. 취약계층

#### 가. 여성

북한은 2021년 유엔에 제출한 VNR 보고서에서 ‘양성평등 및 모든 여성과 소녀들의 권리 보장’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목표 가운데 하나로 제시하는 등 법과 제도를 통해 여성을 차별하는 관습과 관행을 수정 또는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최근 조사에서도 특정 직종에서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금기시되고 있어 영역 제한이 남아 있지만, 제도적으로 여성의 권리가 증진되었다는 증언이 다수 있었다. 여성의 경제력 향상으로 가정 내 발언권이 높아졌다는 증언을 비롯하여 비공식 경제 부문은 물론 공식이나 정치적 영역에서 여성의 진출 및 간부 등용이 늘었다는 증언이 다수 있었다. 무엇보다, 젊은 세대 중심으로 성평등적 가치관이 조금씩 확산되고 있으며 가정폭력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는 증언도 다수 있었다. 다만, 여전히 고정된 성역할과 차별의식이 주민들에게 잔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도시보다 농촌에서 성차별 의식과 가정

폭력에 대한 인식이 낙후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는 북한 경제의 위축을 초래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여성의 경제 활동 축소를 의미하므로, 여성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하락하는 한편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III-15〉 장마당 활성화에 따른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sup>52)</sup>



(1) 여성에 대한 차별

북한 여성의 사회 및 가정 내에서의 지위와 역할은 북한 당국의 주장과 달리 봉건적 가부장적 질서에서 형성된 여성에 대한 차별의식이 넓게 퍼져있어 남성 중심의 남녀 차별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다만,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젊은 세대의 성역할 인식이 기성세대와 조금씩 차별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조사에서 젊은 세대는 부모 세대와 다르며, 여자가 생계를 책임지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를 무시하지 못하는

52) 『연합뉴스』, 2019.4.14. (사진=연합뉴스)

사회로 바뀌었으며, 고정관념은 남아 있어도 남녀가 가사를 함께하는 사례가 다수 있어서 성역할과 남존여비에 대한 인식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약화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성별과 세대를 막론하고 여성의 경제 활동과 남성의 가사 참여가 누적되면서 기성세대의 인식 변화도 다소 견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평등 인식이 가정마다 다르지만, 최근 가계 살림을 여자들이 별어서 하다 보니 여자들의 지위가 높아지고 있어 여성의 경제력이 북한 사회 내부의 공고한 가부장적 질서에 균열을 만들고 있다. 즉, 사회 복지 인프라가 확충되어서라기보다는 여성의 경제력에 의존하는 남성들이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정치적, 공적 영역에서 여성의 진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당증을 가진 여성은 무조건 간부로 등용되며 판사, 보위부, 보안원을 하는 여성들도 많고, 여성 군관도 많아졌으며 여성 대의원도 늘어났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기업소와 협동농장 등에서 지배인, 작업반장, 분조장을 하는 여성들이 많으며 능력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는 증언도 다수 수집되었다. 문제는 여성 차별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능력이 아니라 외모나 인맥과 같은 요소가 간부 등용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인식이 있고, 북한 여성들 스스로도 성차별 인식을 내재화하는 점이다.

한편, 여자들이 경제력을 획득하면서 여성에게 억압적인 가부장적 질서를 거부하고 배우자의 외도나 음주 및 폭력과 같은 부당한 상황을 인내하지 않기 시작하였다. 아편이나 빙두 등으로 결혼생활이 불가능해질 경우에는 이혼이 가능하다고 한다. 다만, 이혼하려면 재판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애초에 결혼등록을 아예 하지 않고 동거하는 경우가 많다는 증언도 늘었으며 이혼이 흠이라는 인식도 열어지고 있다. 다만, 여전히 금전적으로 뿐만 아니라 제도적

으로 이혼이 어렵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그럼에도 여성이 가정과 생계를 모두 떠맡는 이중부담을 지는 현상도 여전히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골 지역은 성에 대한 고정관념 및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골이 봉건적인 사고가 남아 남녀차별이 심하다는 것이다.

## (2) 여성에 대한 폭력

북한이탈주민 대다수는 가정폭력이 빈발하고 있지만, 가정폭력을 가정 내 문제로만 규정하는 사회적 분위기 탓에 공권력이 개입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증언하였다. 경제적 빈곤, 외도, 음주, 마약 등을 이유로 가정폭력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여성뿐만 아니라 아동도 가정폭력에 노출되고 있다. 문제는 가정폭력과 가정불화의 원인을 여성의 잘못이나 결합에 두는 왜곡된 인식도 뿌리 깊다. 여성 권리 신장을 표방하는 여맹 역시 가정폭력 문제 해결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도 부재한다. 이처럼 북한에서 가정폭력에 노출된 여성들은 국가와 사회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다만 최근에는 여성의 경제력과 가정 내 발언권 강화로 가정폭력이 이전보다 줄어드는 추세라는 증언이 일부 수집되고 있다. 대체로 여성의 경제 활동으로 가정의 생계가 가능하다보니 가정폭력이 발생할 경우 여성이 참지 않고 헤어지거나 이혼을 해버리기 때문에 남자들도 폭력을 자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정폭력을 견디지 못한 여성들이 이혼을 결심해도 이혼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인식이 있었다. 따라서 법적으로 이혼 절차를 밟지 않았지만, 별거의 형태로 헤어지기도 한다.

이와 같이 북한은 여전히 전반적으로 가정폭력이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폭력에 대한 인식 변화가 성별과 연령대 전반에 고루 나타나고 있다. 젊은 세대들은 폭력을 미개한 일로 여기고, 결혼 기피 요소로 취급한다는 증언도 있었다. 다만, 도시와 농촌 간의 인식 차이가 폭력 문제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다. 2019년에 탈북한 50대 여성은 농촌과 달리 도시에서는 여자들의 입김이 세서 일을 좌지우지하며 살기에 옛날 처럼 미개하게 폭력을 쓰는 집은 즐었다고 증언했다.

한편, 성폭력은 은밀히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 공개를 꺼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다. 또한,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해당 사건을 성폭력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물리적 폭력이 동반되지 않지만, 사회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여성들이 성적 착취 내지 피해를 경험하는 경우도 많다. 또 하나 지적할 문제는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성교육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북한 여성 중 일부는 성폭력 행위를 경험 또는 목격하거나 성폭력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그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 (3) 탈북 후 송환된 여성에 대한 처우

북한 당국은 인신매매에 취약하게 된 구조적 원인, 즉 국경을 넘기 위해 조직적인 인신매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인신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처벌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 특히 중국 거주 기간에 따라 처벌의 경중이 결정되지만 최근 탈북한 여성들의 증언을 살펴보면, 김정은 집권 이후 강제 송환된 여성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019년 탈북한 50대 여성에 따르면 과거 인신매매 피해자는 단련대에 보내졌지만, 최근에는 형벌이 강화되어 교화소에 보내지고 5~10년 형을 받는다고 한다.

특히, 김정은 체제 출범을 전후하여 국경통제 및 탈북 단속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중국 측 국경통제도 함께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강제 송환될 경우, 처벌을 피하기 위한 뇌물 액수가 치솟고 있으며, 재탈북에 성공하는 경우도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탈북자 가족에 대한 감시 및 단속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과거 탈북하는 경우 인신매매를 당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인신매매에 대한 양국의 처벌이 매우 엄격해짐에 따라 인신매매를 당하는 사례가 감소한다는 주장이 등장하였다. 다만, 도강비용이 치솟음에 따라 탈북의 기회가 돈 있는 사람들만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한국행이라는 사실이 명확해짐에 따라 탈북을 시도했다가 발각되었을 경우 처벌 또한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 당국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 중 가장 큰 문제는 강제송환 과정에서의 강제 낙태와 조사과정에서의 비인도적 처우이다. 중국에서 임신한 이후 강제 송환된 여성들에 대해 낙태를 종용하고 출산 시에 영아를 방치하여 사망하도록 하는 사례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제기되자, 북한은 일부 지역에서 출산을 허용하고 아이를 중국 남성 가족에게 인계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여전히 중국에서 거주하다 강제송환된 여성이 중국인의 아이를 임신한 경우, 송환 과정에서 강제로 낙태시킨다는 것을 목격하였거나 들었다는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이 수집되고 있다.

#### (4) 건강 및 모성 보건

많은 북한 여성들이 1990년대 이래 지속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한 과중한 노동, 가족부양 책임 증대에 따른 심적 부담 등으로 인해 영양실조와 빈혈에 시달리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북한 의료법은 낙태를 금지하고 있으나 모성보호를 위해 예외적인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의료법 제28조). 낙태가 법적으로 금지되다 보니, 병원보다는 퇴직 의사가 있는 집에서 이루어지거나, 개인 의사가 집에 와서 수술한다는 증언이 다수 수집되었다. 특히 미혼은 병원 차트에 기록을 남기면 안 되기 때문에 집에서 하고, 가정이 있는 사람이 병원에서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임과 낙태가 가임기 여성의 건강을 해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의료 장비가 충분치 않은 개인 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에 대한 주의를 크지 않으며, 낙태의 위험성도 잘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낙태하다 사망했다는 경우를 들어봤으나 많지 않다는 증언이 일부 있었다.

한편, 북한은 출산 비용을 무료로 규정하고 있지만, 북한이탈주민은 공통적으로 출산 시 비용이 발생한다고 증언하고 있다. 즉, 북한은 모성 보건을 위해 임신부에게 제도적으로 다양한 혜택을 보장하고 있다.<sup>53)</sup> 출산 비용은 무료이며, 출산휴가가 보장되고, 젖먹이가 있거나 임신한 여성에게는 야간 노동을 금지하는 등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전히 임신 및 출산 과정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모성보건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지표는 모성사망률일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북한은 2019년 UPR에 제출한 국가보고서에서 2014년 10만 명당 62.7명이었던 모성사망률이 2017년 53.2명으로 감소되었다고 밝혔다.<sup>54)</sup> 3년 사이 10명 가까이 감소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국제적으로 볼 때 여전히 높은 편에 속한다. 게다가 2023년 세계보건 기구가 발표한 ‘모성사망률 추이: 2000~2020’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북한의 모성사망률은 출생아 10만 명당 107명으로 북한의 발표와

53) 이금순 외, 『북한의 건강권』 (서울: 통일연구원, 2018), pp. 34~37.

54) UN Doc. A/HRC/WG.6/33/PRK/1 (2019), para. 70.

는 차이가 있다.<sup>55)</sup> 집에서 출산하는 경우에는 개인의사가 오기도 하지만, 자격증이 없는 산파의 도움을 받는다. 그런데 의료 장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환경에서의 출산은 아무래도 병원에서의 출산에 비해서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모성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되는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출산휴가에 대해 살펴보면 북한은 2015년 임신부의 출산휴가를 기존의 180일에서 240일로 연장하였으며, 2019년 UPR 보고서에서도 이 같은 조치를 강조하였다.<sup>56)</sup> 이와 관련해서는 출산휴가가 잘 지켜지며, 임신한 여성은 동원에서 면제된다는 증언이 많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점은 생리대 사용과 관련해서는 헌옷, 가제천 대신에 일회용 생리대를 사용하는 비율이 점차 늘고 있어 개선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북한산 생리대는 초기에는 가격이 비싸고 품질이 낮았지만, 최근에는 북한돈 3,000~5,000원 정도이고 포장도 예쁘고 기능성 제품들이 다양하게 생산되고 있어 중국산보다 북한산이 더 좋다는 증언이 다수 있었다. 다만, 도시에 거주하고, 젊은 세대일수록 일회용 생리대 사용이 필수가 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55) WHO, *Trends in Maternal Mortality 2000 to 2020: Estimates by WHO, UNICEF, UNFPA, World Bank Group, and the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3).

56) UN Doc. A/HRC/WG.6/33/PRK/1 (2019), para. 8.

〈그림 III-16〉 북한의 여성권 실태



### 나. 아동

북한은 김정은 시기 들어 육아원, 애육원 등 고아들을 위한 시설의 현대화, 장애아동을 위한 의료시설과 재활시설을 확충 등 고아나 장애아동에 대한 권리 증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sup>57)</sup> 내부적으로도 법 제정 및 국제사회와 장애인 권리에 대한 소통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57) 북한은 2021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에 관한 자발적 국별 검토(VNR)에서 아동 사망률 감소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하고 2030년까지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을 1,000명당 12명 미만으로 줄이는 목표를 세웠다.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The United Nations* (June, 2021), p. 19.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content/documents/282482021\\_VNR\\_Report\\_DPRK.pdf](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content/documents/282482021_VNR_Report_DPRK.pdf)) (Accessed July 6, 2021).

보인다. 다만, 이러한 시설은 모든 취약 아동에게 균질하게 혜택이 주어지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특히, 장애 불이익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장애를 숨긴다는 증언은 여전히 당국의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의미한다. 한편, 그동안의 조사에 따르면, 북한에서 질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률은 호전되어 왔다고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식량 또한 최악의 상태는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상당수 북한 아동은 영양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 조치 및 국제 사회의 수원 거부는 식량 불안정성을 야기하여 식량 수급에 차질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북한 아동들은 과도한 정치사상 교육을 받고 있으며 정치행사 및 체제선전에 동원되고 있어 이해와 관용, 평화와 연대를 교육받고 성장해야 하는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 특히 아동에 대한 노동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북한 보고에도 불구하고 소학교 학생들조차도 노동에 동원이 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 (1) 아동의 보건과 복지

북한 당국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보육시설의 확충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 애육원과 중등학원 시설이 좋아지면서 국가적 지원이 잘 이루어지면서 좋아졌다는 증언도 일부 나왔다. 또한 김정은 집권 이후 고아들을 위한 시설을 많이 설치하였는데, 이를 통해 고아에 대한 국가의 사회적 책임을 일부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은 2019년 UPR에서 공공 보건의료를 개선하여 평균 기대수명을 늘리고, 유아 사망률 감소를 보건 부문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는 등 주요 건강 지표를 선진국과 일치시키기 위해 국가 투자를 늘리고 제도적,

실제적 조치를 취했다고 보고하였다.<sup>58)</sup> 2021년 VNR에서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평양유선중앙연구소, 옥류아동병원, 류경안과종합병원, 류경치과병원 등 현대적 의료시설을 설립하고 2020년부터 평양종합병원 건설을 추진 중에 있다고 보고했다.<sup>59)</sup>

실제로 그동안 조사에 따르면, 북한에서 질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률은 호전되어 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그동안 계속되어온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 보건성은 유엔아동기금 및 국제백신면역연합(GAVI) 등과 함께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을 지속해 왔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와 인력과 물자 이동 차단은 필수백신에 대한 수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별히 코로나19에 대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고 취약계층을 위한 필수 의약품, 의료기기 반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북한 주민의 건강 상황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또한 영양 상태 또한 최악의 상태는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상당수의 북한 아동은 영양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식량농업기구(FAO)의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의 영양부족 인구비율이 2018년 42.6%에서 2019년 43.0%로 하락하였고 2020년에는 41.6%로 다소 줄어들었지만 1,070만 명이 영양부족 상태에 놓여있다.<sup>60)</sup> 2020년 북한의 영양부족비율(41.6%)은 아프리카 19.1%, 최빈개도국 22.9%, 저소득국가 29.6% 보다 높은 수준이다.<sup>61)</sup> 이미 만성적인 식량부족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에게 2020년 1월 이후 이어지는 코로나19 봉쇄 조치는 식량불안정성을 야기하며 식량수급에 차질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58) UN Doc. A/HRC/WG.6/33/PRK/1 (2019), para. 35.

59)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p. 18.

60) FAO, IFAD, UNICEF, WFP and WHO, *The State of Food Security and Nutrition in the World 2022*, (Rome: FAO, 2022).

61) *Ibid.*

## (2) 아동의 교육권

김정은 시기 들어 무상교육제도를 새롭게 정비하는 등 전반적으로 교육에 제도화와 현대화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 북한은 전국적으로 본보기학교 건설과 현대화 공사, 다기능화된 교실 확대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교육조건과 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62)</sup>

### 〈그림 III-17〉 김정일 생일 80주년 경축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단체대회<sup>63)</sup>



그러나 북한의 교육과정 편성 현황을 보면 여전히 정치사상교육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으며, 현 최고지도자와 그의 가계를 우상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더욱이 정치사상교육이 정규 교과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조선소년단,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등 의무적인 조직 생활을 통해서도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아동의 발달권을 보장한다는 보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학생들을 각종 정치행사나 체제선전에 동원시

62) 『조선중앙통신』, 2022.7.6.; 『노동신문』, 2022.2.13.

63) 『조선중앙통신』, 2022.2.12. (사진=연합뉴스)

키고 있어 휴식과 여가를 누릴 권리 등이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북한은 아동의 나이를 16세까지로 규정하고 아동노동이 철폐되어 있다고 주장하지만, 16~17세의 아동의 노동 부대 배치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며 실제로 북한의 교육과정을 보면, 초급중교들도 나무심기, 그리고 고급중학교의 경우 나무심기와 생산노동을 포함시키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공식적으로 정해진 교육과정 외에도 방과 후나 수업시간에 학생들을 각종 작업에 수시로 동원하고 있다. 봄에는 김매기와 모내기에, 가을에는 감자캐기에 동원된다. 매년 의무적으로 나가는 농촌 동원은 새벽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육체적으로 힘들고,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라 정신적인 부담도 크다고 한다. 또한 학생들은 모래나르기, 자갈나르기와 같은 건설작업이나 벌목, 철길공사에 동원되기도 한다. 몸이 아픈 경우엔 동원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동원에서 빠지려면 대부분 돈을 내는 것이 관행이 되었다.

### 〈그림 III-18〉 도로 보수 나선 북한의 어린이<sup>64)</sup>



64) 『연합뉴스』, 2014.11.25. (사진=연합뉴스)

이에 아동권리위원회는 북한의 교육과정에서 수행되는 각종 농사 및 건설 활동 등이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sup>65)</sup>

### (3) 장애아동 권리

북한은 장애아동에 대한 권리 증진에 관해서는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내부적인 법 제정 및 국제사회와 장애인권리에 관한 소통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은 2018년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보고서를 통해 장애인 교육시설 확충, IT 기반 시설 확대 등 장애아동을 위한 양질의 교육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9년 UPR에서 시각 및 청각장애자 학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법적, 제도적 조치를 마련했다고 보고하였다.<sup>66)</sup>

그러나 실제로 북한이탈주민 증언에 의하면, 장애인 교육시설을 직접 목격하거나 들은 경험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학급 운영이나 장애아동 재활 및 직업 훈련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은 수집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평양 외곽에 청각장애 아동을 위한 유치원이 개원했다는 소식이 단편적으로 있으나,<sup>67)</sup> 북한 전역에 시청각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학교는 11개에 불과하다. 특히 양강도 지역에는 이러한 학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장애아동에 대한 특수교육 실태가 열악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 (4) 고아실태

김정은 시기 들어 애육원 및 육아원 등 고아를 포함한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시설확충과 지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취약계층의 아동 교육권

65) UN Doc. A/HRC/WG.6/33/PRK/2 (2019), para. 87, 88.

66) UN Doc. A/HRC/WG.6/33/PRK/1 (2019), para. 11.

67) "North Korea opens kindergarten for hearing-impaired children," *UPI*, July 1, 2016. <<https://upi.com/6352451>> (Accessed July 6, 2021).

이나 건강권이 실제로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꽃제비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상반된 증언들이 수집되었다.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꽃제비는 별로 없었으며 코로나 발생 이전 시기였기에 쌀값도 안정적이었고 장마당에 1~2명 있는 정도라고 하였다. 이 외에도 꽃제비는 거주지 부근에서 가끔 목격되거나 거의 볼 수 없었다는 증언이 다수 수집되었다. 반면, 꽃제비는 여전히 많거나 증가한다는 증언도 확인된다.

따라서 북한 당국은 꽃제비들을 보호·관리한다는 취지 아래 단속에 걸린 꽃제비들을 ‘구호소’, ‘숙박소’, ‘소년교양소’, ‘방랑자 숙소’, ‘구제소’ 등으로 불리는 수용시설로 보내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꽃제비가 고아들을 위한 애육원과 중등학교에 어느 정도 수용되고 양육과 교육의 혜택을 받는지 명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 다. 장애인

북한은 장애인을 특정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장애인 정책을 전향적으로 대응한다. 2019년 제3차 UPR 시 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한 유엔 회원국들의 권고를<sup>68)</sup> 수용하였다.<sup>69)</sup>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 인식이 북한 사회에 여전히 남아 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교육과 서비스를 별도의 시설에서 진행함으로써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일반 주민들은 장애인들을 거주지 주변에서 목격하기 어렵고 장애인들에 대해 무관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영예군인들에게는 부분적으로 혜택이 부여되는 것으로 파악되나, 산업재해 및 사고로 인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호 및 지원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정은 시대 들어 장애인이나 영예군인들

68) UN Doc. A/HRC/42/10 (2019), para. 126.193~126.199.

69) UN Doc. A/HRC/42/10/Add.1 (2019), para. 9(a).

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증언도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경제난으로 인한 공장가동률의 하락 및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는 북한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장애인들의 건강과 교육, 노동에 대한 권리 향유를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 (1) 장애인 권리 실태

북한 당국은 장애자보호법에 따라 장애인의 훈련 및 재활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들이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을 위한 공장을 운영하면서 배려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왜소증, 소아마비 등의 장애인들은 지역 편의봉사시설(편의봉사관리소)에서 도장 만드는 일, 시계, 자전거, 신발, 텔레비전 등을 수리하는 일과 같은 경노동을 하며, 일부 시각장애인들은 기타를 연주하여 돈벌이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국가적으로 배려 혹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 가족부양으로 생활하거나, 아니면 구걸을 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보인다. 2020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평양에서 장애인에게 국가가 주는 혜택은 없었다고 증언하였다.

무엇보다 국가 차원에서의 장애인 대우나 지원은 대개 영예군인을 대상으로 한다. 즉, 북한 내에서 장애인은 우대를 받는 영예군인과 일반 장애인으로 구분되는데, 공장의 경우에도 영예군인 공장과 일반 장애인 공장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70)</sup> 북한은 영예군인을 고용하는 공장을 운영한다. 그러나 이것도 그들의 급수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급수가 높은 영예군인들은 많은 혜택과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급수가 낮은 영예군인들에게는 지원 규모가 크지 않고, 해마다 일정치도 않으며,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

70) “北, 런던 패럴림픽 첫 참가...장애인 정책 변화?” 『데일리NK』, 2012.8.28.; 이규창 외, 『인도적 지원을 통한 북한 취약계층 인권증진 방안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13), pp. 71~72.

고 있다. 그러나 영예군인에 대한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나 실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증언도 많았다. 바꿔 말하면, 상당수의 영예군인에 대한 지원은 안정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영예군인이 혜택을 받지 못했다거나, 영예군인 등록 시 혜택보다 불이익이 커서 등록을 하지 않는다는 증언도 있다. 영예군인으로 등록하면 배우자가 공식 직장에 속해서 일을 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장마당에서의 사경제 활동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시어머니가 등록을 말렸기 때문이라고 증언하였다.

## (2) 가정 및 지역 사회 동참 노력 실태

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반하는 대표적 인권유린 사례는 거주지 선택과 지역사회 통합을 방해하는 왜소증 장애인에 대한 격리지역의 운영이다. 북한이탈주민 상당수는 왜소증 장애인을 격리하는 지역이 존재한다고 증언하고 있다. 대표적인 지역이 김형직군(구 후창군) 연하리이다.

한편, 비인도적 차별 대우와 가정 및 가족에 대한 존중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인권 침해행위로 왜소증 장애인에 대한 불임수술을 들 수 있다. 2015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2014년 함경북도 온성군에서 왜소증 장애인들이 강제로 불임수술을 당했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격리지역에 보내진 이들에게 2세를 낳지 못하도록 나라에서 강제로 피임을 시켰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불만과 항의가 계속됨에 따라 최근에는 자녀를 낳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이탈주민 면접조사 결과 장애인에 대한 강제 불임수술 관련 증언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일반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따라서 왜소증 장애인을 목격하였다는 사례도 수집되고 있다. 함경북도 나선시에 거주했던 북한이탈주민은 2016년 나선 시내에서 왜소증 장애인과 척추장애인을 목격했다고 증언하였다. 이러한 증언에 비추어 볼 때 일부 왜소증

장애인 격리촌이 운영되지만 모든 왜소증 장애인을 격리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속적인 증언을 통해 왜소증 장애인 격리에 대한 보다 분명한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장애인의 거주지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또 다른 사례는 장애인에 대한 거주지역 제한이다. 북한이탈주민들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특수지역인 평양과 외국인의 출입이 잦은 남포, 개성, 청진 등에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 (3)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제고 실태

북한도 장애자보호법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먼저 북한 당국은 장애자보호법(2013) 제49조에 따라 2011년부터 6월 18일을 ‘장애자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sup>71)</sup> 그리고 북한은 2010년부터 조선장애자보호연맹 중앙위원회의 주최로 12월 3일 평양에서 ‘세계 장애인의 날 행사’를 기념하는 ‘장애자 연합모임(Joint Celebrations on the Occasions of the International Da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을 매년 개최하여 오고 있다.<sup>72)</sup> 북한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스포츠 행사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을 제고하는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국가체육지도 위원회의 조직(2012년 11월) 등을 통해 장애인 체육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있다. 최근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참가하는 탁구경기가 정례화되고 있으며 참가인원 수도 늘어나고 있다.<sup>73)</sup>

다만, 최근에 장애인이나 영예군인들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증언도 있었다. 북한은 장애인권리협약 최초보고서에서 공공시설 등에 대한 북한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들

71) 『조선신보』, 2014.6.24.

72) 이규창 외, 『인도적 지원을 통한 북한 취약계층 인권증진 방안 연구』, p. 72; 『조선신보』, 2013.12.7.

73) 이규창, 위의 책, p. 72.

이 사회에 완전히 통합되어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선진기술 도입 및 확산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sup>74)</sup>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2019년에 건설법규로 ‘무장애건축설계기준’을 채택하였다.<sup>75)</sup> 이는 북한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조치의 일환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최근에는 북한 당국이 대중 매체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를 꾀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2018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2016년경 장애인에 대한 당국의 배려를 TV에서 선전하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였다. 또 다른 2018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도 2017년 말부터 TV에서 장애인 공연단, 장애인 학교 등 장애인에 대한 소식이 많아졌다고 증언하였다. 2019년에는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 해 동안 북한 당국이 장애인 인권 증진을 취해 실시한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sup>76)</sup>

실제로 2018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평양시민 중에 장애인이 출생했다고 해서 지방으로 보내지는 않는다고 증언했다. 2018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최근 장애자들은 어떤 면에서는 손재간이 있어서 사는 형편이 괜찮고 영예군인과 결혼하는 것도 좋아한다고 증언하였다. 장애인들을 차별하거나 무시하지 않으며,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 불쌍하게 생각한 적 없고 오히려 잘 살아서 시기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또한 장애인들은 직장에 가지 않아도 되고 자기 돈벌이만 하기 때문에 더 잘 살아서 시집 장가를 잘 간다는 증언이 있었다.

이는 장애인 복지를 통해 당국의 치적을 알리려는 정치적 의도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장애인에 대한 언급 자체가 기피되었던 과거와 비교할 때 긍정적 변화로 볼 수도 있다.

74) UN Doc. CRPD/C/PRK/1 (2018), para. 76.

75) 『조선중앙통신』, 2019.12.18.

76) 위의 글.

# IV

## 코로나19가 북한인권 미친 영향





## IV. 코로나19가 북한인권엔 미친 영향

북한은 코로나19의 자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경을 봉쇄·차단하였다. 내부적으로는 전염병예방법 개정(2020.8.22.)과 비상방역법 제정(2020.8.22.)을 통해 주민들의 이동 제한·격리 조치를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북한 당국의 조치는 북한 주민의 생명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거주·이전의 자유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건강권, 식량권, 취약계층 인권 등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을 악화시켰다. 아래에서는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과 생명권 침해, 인도적 상황 악화, 통제 및 통치 강화 등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코로나19가 북한인권엔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 다만, 북한 당국의 국경봉쇄 정책의 여파로 국내에 들어온 북한이탈주민이 급감하여<sup>77)</sup> 코로나19로 인한 인권침해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 1.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과 생명권 침해

다양한 북한인권의 영역 가운데 구체적인 수치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숫자다. 북한은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자와 사망자 발생을 부인하다가 2022년 4월 말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북한 보도에 따르면 2022년 8월 10일 기준으로 74명이 사망하였다.<sup>78)</sup>

77) 2019년 1,047명이었던 입국인원이 2020년 229명, 2021년 63명, 2022년 67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책: 최근현황,”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actorsPolicy/status/lately/>> (검색일: 2023.1.31.).

78) 통일연구원, “북한 코로나19 현황,” <<https://kinu.or.kr/cms/content/view/938>> (검색일: 2023.1.31.).

코로나19 발생 이후 개정된 북한의 전염병예방방법과 제정된 비상방역법은 비상방역등급을 1급, 특급, 초특급의 세 단계로 구분하고, 봉쇄·제한·차단, 격리 조치를 실시하였다.

〈표 N-1〉 북한의 비상방역 등급<sup>79)</sup>

등급	상 황
1급	악성전염병이 북한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 국경통행과 동식물, 물자의 반입을 제한하거나 북한에서 악성전염병이 발생하여 발생지역에 대한 인원, 동식물, 물자이동을 제한하면서 방역사업을 진행하여야 할 경우
특급	악성전염병이 북한에 들어올 수 있는 위험이 조성되어 국경을 봉쇄하거나 북한에서 악성전염병이 발생하여 해당 지역을 봉쇄하고 방역사업을 진행하여야 할 경우
초특급	주변 나라나 지역에서 발생한 악성전염병이 북한에 치명적이며 파괴적인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조성되어 국경과 지상,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을 봉쇄하고 집체모임과 학업 등을 중지하거나 북한에서 악성전염병이 발생하여 해당 지역과 인접지역을 완전봉쇄하고 전국적인 범위에서 보다 강도 높은 방역사업을 진행하여야 할 경우

우려스러운 점은 북한 주민들이 방역 조치를 위반하였을 경우 과도한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북한 법규는 “이 법을 어겨 ... 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꾼과 개별적 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책임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고 규정하고 구체적인 처벌은 행정처벌법과 형법에 따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이례적으로 북한 비상방역법은 ‘비상방역질서위반행위에 대한 법적책임’을 별도의 장(제5장)으로 편제하고 13개의 처벌조문(제63조~75조)을 두고 있다. 특히 비상방역법은 북한 주민이 방역조치를 위반하였을 경우 최고 사형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문은 2020년 비상방역법 제정 당시 2개 조문에서 2021년 개정 시에는 3개 조문으로 증가하였다.

79) 북한 「비상방역법」 제3조.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비상 상황의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제한은 당해 사태의 긴급성에 의하여 엄격히 요구되는 한도 내에서 허용된다(자유권규약 제4조 제1항). 이 같은 국제인권규범의 기준에 비춰봤을 때 북한 당국이 방역조치 위반을 이유로 주민에게 사형까지 부과하는 것은 비례성을 벗어난 조치로 생명권에 반한다.

〈표 IV-2〉 북한 비상방역법의 사형 조문

제정 비상방역법(2020.8.22.)		개정 비상방역법(2021.10.19.)	
비상방역사업 관련한 명령·정령·결정·지시 집행태만죄(제65조)	극히 엄중할 경우 무기 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비상방역사업 관련한 명령·정령·결정·지시 집행태만죄(제69조)	극히 엄중할 경우 무기 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국경·지상·해상·공중 봉쇄태만죄(제68조)	극히 엄중한 경우 무기 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국경·지상·해상·공중 봉쇄태만죄(제72조)	
		비상방역사업방해죄(제73조)	

## 2. 인도적 상황 악화

북한은 2020년 6월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여 평양시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생활용수, 채소를 제공하기 위한 ‘중대 결정’을 채택하였다.<sup>80)</sup> 이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매우 이례적인 조치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영향이 수도 평양에까지 미쳤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코로나19 이후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다는 북한이탈주민의 증언도 있다. 쌀 가격이 북한돈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랐고, 특히 중국 수입품 가격이 2~3배로 뛰었다고 한다. 돼지고기는 2배, 건전지는 5배가 올랐고, 국산 고춧가루나 수입하는 조미료값도 올랐다고 한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서도 만성적인 식량 부족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북한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과 지역의 식량난이 심화

80) 『민주조선』, 2020.6.27. 회의 날짜는 공개하지 않았다.

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개성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은 코로나19가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에 미치고 있는 심각성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코로나19는 북한 주민의 건강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2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약진(백신) 접종을 책임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정보원은 2022년 9월 28일 북한이 국경 지역에 대규모 백신 접종을 실시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였다. 반면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대변인은 북한이 코백스(COVAX)에 정식으로 코로나19 백신 공급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이 같은 상반된 입장을 종합하면, 북한이 백신 접종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접종률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는 북한 취약계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2022년 7월 17일 충분한 식량 확보 등 기본적 필요를 충족하는 어려움을 겪는 북한 주민들, 특히 아동, 수유여성, 노인, 소외된 농촌과 국경지역 주민들이 취약한 상황이라고 하였다. 장마당을 통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향상되었던 북한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와 위상이 코로나19로 인한 이동제한 조치로 장마당이 타격을 입으면서 다시 내려가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이 악화된 데에는 코로나19 외에 북한 당국에 제도 책임이 있다. 국제 인도주의 단체와 기구들은 인도적 지원 및 백신 지원을 제안하였지만 북한 당국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유엔 인권이사회와 총회는 코로나19 이후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에서 국경을 재개하여 인도주의 단체의 활동 재개를 허용할 것과 COVAX와 협력할 것을 북한 당국에 권고하였다.<sup>81)</sup>

81) UN Doc. A/HRC/RES/49/22(11 April 2022), para. 2; UN Doc. A/RES/76/177(10 January 2022),

### 3. 통제 및 통치 강화

북한은 2020년 1월 28일 코로나19의 위험성이 사라질 때까지 위생방역체계를 국가비상방역체계로 전환하였다. 이어 2020년 1월 29일 노동신문은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한 사업을 ‘국가 존망과 관련한 중대한 정치적 문제’로 간주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020년 7월 26일에는 정치국 비상확대 회의를 개최하여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대응 수준을 격상하였다. 북한이 이와 같이 코로나19 대응을 단순한 보건의료 문제가 아닌 국가의 존립과 관련한 문제로 대응한 이면에는 이동 제한과 격리 조치, 이로 인한 장마당과 경제 활동 제한, 식량 사정 악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주민 불만과 체제불안정 요소로 작동할 가능성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북한이 코로나 19 발생 초기부터 언론매체와 김정은 발언 등을 통해 코로나19 사태의 엄중성과 위기감을 지속적으로 강조한데서 나타난다.<sup>82)</sup> 대표적으로 북한은 관영매체를 통해 “대중의 방역위기위식을 부단히 높이기 위한 정치 사업을 실효성 있게…통제를 시종일관 강화할 것”이라고 하였고,<sup>83)</sup> 관리들을 대상으로는 유일영도체계 실현을 강조하며 처벌과 인사조치를 통한 기강 잡기에 주력하였다.<sup>84)</sup> 대표적으로 김정은은 2021년 6월 29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정치국 확대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코로나 19 장기화에 대응한 당의 중요 결정 집행을 태공(태만)히 함으로써 국가와 인민의 안전에 커다란 위기를 조성하는 중대사건을 발생시킨 일부 책임 간부들의 직무태만 행위를 지적하고 인사교체를 단행하였다.<sup>85)</sup> 2022년 9월 14일~15일에는 5년 만에 ‘전국법무일군대회’를 개최하였는데<sup>86)</sup>

para. 18.

82) 김호홍·박보라, 『코로나19 위기를 활용한 북한의 체제 강화 동향』, (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2), pp. 10~12.

83) 『노동신문』, 2021.5.3.

84) 김호홍·박보라, 『코로나19 위기를 활용한 북한의 체제 강화 동향』, pp. 12~15.

85) 『노동신문』, 2021.6.30

조선중앙통신은 “온 사회에 혁명적인 준법기풍을 확립하고 사회주의법률제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였다고 보도하였다.<sup>87)</sup> 특히 이 자리에서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적 행위들을 쓸어버리는 법적 투쟁’을 강도 높게 벌였다고 하였다. 유럽연합은 2021년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이 국경봉쇄와 여행제한 조치로 주민들의 시장 활동 및 정보접근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국가 권위를 강화하였다고 지적하였다.<sup>88)</sup> 휴먼라이츠워치는 2023년 월드리포트에서 북한이 코로나19 사태를 빌미로 인권을 탄압하였다고 지적하였다.<sup>89)</sup>

〈그림 IV-1〉 방역규정 절대준수를 강조하는 북한 포스터<sup>90)</sup>



86) 법무일군은 검찰소, 재판소 등의 기관에서 법률 업무에 종사하는 간부와 실무자들을 말한다. 북한에서 전국 법무일군대회가 개최된 것은 2017년 10월 이후 5년 만이다.

87) 『조선중앙통신』, 2022.9.16.

88) “... The measures appeared also to be part of a strategy to strengthen the authority of the State by further restricting access to information and the ability to engage in the unofficial market transactions on which much of the population depends for its livelihood.” EU, *EU ANNUAL REPORT ON HUMAN RIGHTS AND DEMOCRACY IN THE WORLD 2021 COUNTRY UPDATES* (2021), p. 198.

89) Human Rights Watch, “북한: 코로나19 사태를 빌미로 인권을 탄압하다,” 2023.1.12., <<https://www.hrw.org/ko/news/2023/01/12/north-korea-covid-19-used-crush-rights>> (검색일: 2023.2.5.).

90) 『조선중앙통신』, 2022.5.23.

V

## 결론





## V. 결론

김정은 집권 이후 국제사회는 COI 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책임규명을 위한 노력을 지속·강화하고 있으며, 미국, 유럽연합, 영국은 인권 침해를 한 북한 기관 및 개인에 대한 제재를 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국권과 자주권을 내세우며 책임규명과 인권제재를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 제도 전복 시도, 북한 체제에 도전으로 간주하여 반발하고 있다. 2019년에는 대응조치법을 제정하면서 ‘공화국 존엄을 모독하는 행위’를 비우호적인 행위의 첫 번째 유형으로 제시하였고, 2015년 이후 형법 개정을 통해 공화국 존엄모독죄를 신설하였다. 국제사회와 북한 모두 정보유입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국제사회는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증진 차원에서 외부정보의 북한 유입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북한은 사상통제·정보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국제사회는 인도지원·개발협력을 통한 북한인권 증진 활동도 전개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인권 사안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용·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개처형은 김정은 시대에도 지속된 가운데 비밀처형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증언들이 수집되었다. 이는 공개처형에 대한 국제사회의 문제 제기를 의식한 조치로 판단된다. 고문 및 가혹행위도 김정은 시대에 지속된 가운데 구금·교정시설에서는 감소되었다는 증언들이 수집되었다. 공개처형과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의 문제 제기를 북한 당국이 의식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북한인권 실태가 개선되었다고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북한은 최근 주민 통제를 강화하고 있어 구금시설 내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가 악화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정치범수용소 운영이 지속되었다는 사실도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으로 확인되었다. 18호 관리소의 경우 출산과 교육이 이루어지고 사법체계가 갖추어져 있다는 증언

이 있었는데 정치범수용소 전체의 실태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사상·정보통제 차원에서 방송·녹화물에 대한 단속과 처벌,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뇌물로 무마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한국 방송·녹화물 시청·유포행위, 한국행 시도 목적의 휴대전화 사용은 강한 수준의 처벌을 받고 있다.

김정은 시대에도 북한 주민들은 지속적인 식량난으로 인한 영양부족 상태를 겪고 있다. 매년 부족한 식량 생산량 이외에도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식량 배급, 북한 주민들의 식량 자구책인 소토지 농사의 어려움, 효율적이지 못한 식량증산정책, 국가의 무리한 공출 등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북한에서는 식량난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북한 주민들은 적절한 식량권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 이후 북한은 의료기관 현대화, 의료봉사의 질 개선, 원격 진료체계 구축 등 주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공공 의료체계가 붕괴됨에 따라 주민들의 보건의료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의 정치적, 경제적 수준 등에 따라 의료 차별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북제재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백신 등 의약품 수입이 이루어지지 못해 북한 주민들은 건강한 삶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을 기본법으로 해 다양한 범주와 대상에 따라 사회보장권 관련 법규를 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권을 보장하려는 당국의 실천 의지가 낮고, 이를 위한 국가재정도 매우 열악하다. 결국 연로연금, 긴급복지 등 북한의 사회보장제도는 현실 사회에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서 북한은 교육 분야에 대한 정책적 투자를 늘리고 있으나 지역 간, 학교 간 교육환경에 대한 격차가 크고, 교원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여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울러 북한은 무상의무교육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실제

로는 교육 관련 비용을 학부모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와 현실의 괴리가 존재한다.

북한에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으며, 근로환경이 열악하다보니 노동자들의 권리가 적절하게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해외파견 노동자의 경우 선발과정에서부터 뇌물을 제공할 수 있는 경제력 또는 토대(배경)가 필요하고, 해외파견이 된다고 하더라도 무리한 노동시간과 적절하지 못한 임금 체계 등으로 인해 노동권이 침해당하고 있다.

북한은 2021년 유엔에 제출한 VNR 보고서에서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여성을 차별하는 관습과 관행을 수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북한 사회에서는 여전히 고정된 성역할과 여성에 대한 차별의식이 주민들에게 잔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도시보다는 농촌에서 성 차별 의식과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이 낙후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북한 경제의 위축은 여성의 경제활동 축소로 이어져서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서 북한은 아동 관련 시설의 현대화와 권리 증진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당국의 조치는 모든 아동 시설에 균등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국경폐쇄로 인해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이 중단되어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식량 수급의 불안정으로 인해 아동들이 영양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북한의 아동들은 김정은 시대에도 과도한 정치사상 교육과 정치행사에 동원되어 아동권을 침해 받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 인권 상황과 더불어 김정은 집권 이후, 특히 2020년을 전후한 북한의 인권정책은 북한인권 개선 활동의 도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권정책에 있어서의 북한의 상반된 태도와 실패는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문제 해결 접근을 요구한다. 책임규명과 정보유입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면서 동시에 북한 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주민들의 인권과 인도

적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풀어가야 한다. 코로나19가 북한인권엔 미친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과제도 국제사회 앞에 놓여 있다.

김정은 시대

# 북한인권은 변화하고 있는가?